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

일 시 : 2019. 4. 18.(목) 14:00~16:30
장 소 : 라온컨벤션 가람홀 1층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사단법인 대전장애인인권포럼

기 념 사 Commemoration Ceremony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상환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전장애인인권포럼과,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회균등법인「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로서 여러 차별 영역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오고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천적 논의와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매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큰 주제인 혐오차별 문제에 대하여는 장애 영역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공연히 말하여 지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 역시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하여「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장애인 혐오 차별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혐오차별 철폐 교육이 가지는 역할,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폭넓게 짚어보고, 사회 인식과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 토론회가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1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상환**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한 가족이 되고 지구의 반대편 사람과 시시때때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잘 한일과 못한 일을 판단하는데도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장애인도 다 같은 사람인데 장애인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데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혐오 사상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추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이들 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길거리에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은 시위를 합니다.
결사반대를 해 놓고 막상 건물이 들어서면 주민들 또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남녀 간의 사랑도 반대부터 합니다.
TV드라마 속에서도 장애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로 설정됩니다.
지적 장애인에게도 그의 맞는 일을 찾아 교육시켜서 맡겨주면 잘 해내는데도 해 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된 지도 어느 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런데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변할 줄을 모르는 것이 현재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인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양보하고 받아드릴 때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며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행복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색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 4. 18.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안승서**

토론회 일정 및 순서

▢ 일 시 : 2019. 4. 18.(목) 14:00 ~ 16:00

▢ 장 소 : 라온컨벤션 가람홀 1층(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주 제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구 분	일 정
13:00~14:00	○ **등록 및 접수**
14:00~14:15 ('15)	○ **개회 및 안내** 【사회 : 대전인권사무소 **이경혜**】 – 기념사('5) : **정상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 축 사('5) : **이장우** 국회의원 – 축 사('5) : **안승서** 대표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본 행 사	【좌장 : **정지웅**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
14:15~15:15 ('60)	주제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발제1】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 고찰('15)** **김순영 관장**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제2】 **장애인 거주시설의 혐오차별과 교육('15)** **유한별 원장**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뜻마을) 【발제3】 **장애인 혐오차별 관련 보도 현황 및 표현법의 문제('15)** **이권희 대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안토론】 **장차법을 통해 본 혐오차별('15)** **이민훈 교수** (대전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학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원장)
15:15~15:50 ('3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토론자, 참여자
15:50~16:00	○ **폐회('10)** : 대전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목 차 Contents

- [발제 1]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 고찰 ····· 1
  김순영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발제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혐오차별과 교육 ····· 15
  유한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뜻마을 원장

- [발제 3] 장애인 혐오차별 관련 보도 현황 및 표현법의 문제 ····· 33
  이권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현안토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본 혐오차별 ····· 87
  이민훈 대전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원장

-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09

-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3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발제 1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 고찰

김순영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 고찰

김순영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Ⅰ. 들어가며

2013년 이후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으며, 표적집단에 대한 심각한 해악이 드러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표적집단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혐오차별의 피해경험은 성적 소수자 87.5%, 장애인 73.5%, 기타여성 70.2%로 나타나 표적집단의 구성원들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상에서는 더 많은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고 토로했는데 국가인권위 조사에 참여한 200명의 장애인 중 95%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온라인 뉴스 댓글(78.5%)이나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73.7%), SNS(73.3%) 등에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했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소수집단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경험은 고스란히 혐오표현으로 나타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포감, 위축감, 좌절감이나 우울감, 자신감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어 인격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며 결국에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오래전부터 내려온 사회의 뿌리 깊은 장애인 차별과 혐오의 시각으로 인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고 살아가는데 매우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했고 현재까지도 해소되기엔 먼 길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혐오차별교육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며 장애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장애인주·단기 보호시설 및 작업장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인권교육 등으로 장애차별 및 혐오에 대한 개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에서 정리하였고 현재 혐오차별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담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혐오표현 알아보기

1. 혐오표현 규제의 방향

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인종, 피부색, 국적, 성, 장애, 종교,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집단 특징을 근거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경멸의 소통”을 포함하는 표현을 일컫는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사회 전반에 소수자 표적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 표현은 지속적, 구조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차별을 받아온 특정 집단인 표적집단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그 구성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공포감, 위축감, 좌절감, 내면의 자기부정을 야기하며, 이들을 침묵시킴으로써 대항표현을 저지한다.

또한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시킴으로써 사회전체에 대해 이들에 대한 차별, 증오,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함으로써 공론장의 숙의를 파괴한다. 시민사회에 의한 자정작용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공론장이 파괴되고,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어떤 행위가 혐오표현 개념에 적절히 포섭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의 거점에서 배제한다면, 그것은 그 표현을 정상화하고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혐오표현 발화자는 더욱 고무되어 혐오표현을 확산시키고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혐오표현 개념 범위를 적절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혐오표현 개념을 규정하는 경우에 법적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언제나 법적 개념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별영역에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을 제정한다면, 그 영역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유연하게 가이드라인 상의 혐오표현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영역의 맥락에 맞게 혐오표현 개념을 적절하게 확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혐오차별교육을 들여다보며

혐오표현에 관한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 초중고의 경우 35% 이지만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95.5%가 매우 또는 다소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초중고에서는 학교 환경변화에 따라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학교교육의 지향점 및 사건 처리 기준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안으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상급기관이나 관리자의 책임과 함께 공교육 교사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혐오표현 예방 교육과 담당자의 지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폭력과 학생선도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3. 국내외 혐오차별교육 가이드라인 사례

1)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관계법령에서 보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6항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 및 관련자에게 모욕이나 비하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이며 이를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 초중등교육은 주로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총 17개의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라북도 등 4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혐오표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7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혐오표현과 관련한 내용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단위에서는 학생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언어폭력 금지’등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수자 집단과 관련한 규정은 대체로 없는 편이다. 다만 장애에 관한 규정을 간혹 발견할 수 있는데 장애학생에 관한 건으로는

-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장애상태 흉내내기, 대상 학생에 대한 비하 발언 등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되며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서울덕수초등학교 생활규정 제8조 5항)
- 학습도움실 장애우를 괴롭히는 학생: 교내봉사, 사회복사, 특별교육에 처함(서울염경중학교 선도규정 징계기준표 기타영역 2항)

2) 미국 초중등 공립학교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표현 규정 외에도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에 대한 대처방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교육국 산하 시민권국(OCR)이나 주교육부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 차별에 근거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에 근거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및 학교구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교육부의 OCR은 1999년에 발행한 〈괴롭힘 및 혐오범죄에 관한 안내서〉를 통해 차별에 근거한 괴롭힘과 혐오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내서에는 크게 1장 괴롭힘과 혐오범죄 철폐를 위한 복합적 접근을 위한 원칙, 2장 각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는데 (1)문서화된 정책의 개발, (2)사건에 대한 규명과 대응, (3)공식적인 처리 절차 제공, (4)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풍토 조성, (5) 혐오범죄 등 예방을 위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관과의 연계 등이 있다. OCR은 이와 더불어 차별적 괴롭힘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시한다.

3) 영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첫째, 평등법에 근거하여 학교 내에서 차별과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교육감독법 및 교육규칙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의 관점이 있다.

4) 호주에서는 차별금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서호주의 교육부는 이에 근거하여 2018년 5월, ‘동등한 기회, 차별 및 괴롭힘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였다. 이 정책은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포괄적이며 평등한 업무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초중등학교에서의 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초중등학교에서의 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안내와 지침, 그리고 해당 국가의 차별금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초중등학교의 경우 혐오표현의 문제를 별도의 영역으로 나누기보다는 인권과 시민권의 영역에서 다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초중등학교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는 인권과 시민권의 가치와 더불어 학교폭력 문제와 연결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초중등학교의 차별금지규정이나 학교폭력예방규정은 모두 공통적으로 각 규정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 및 상급기관의 정책을 밝히고 있으며, 학교의 각 구성원(학교장 등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을 각각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규정이나 정책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따를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사안이 종료된 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Ⅲ. 혐오차별 교육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경험으로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위의 혐오표현 알아보기와 맥락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1) 혐오차별 교육들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사명감을 느낀다고도 하였다. 또한 혐오차별 내용의 교육을 세분화해서 본다면 장애에 대한 교육은 많이 진행된 편이라고 본다. 하지만 혐오에 관한 교육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인권에 대한 몸에 체득된 정서와 교육

이 필요하므로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자료에서 최근 1~2년 사이, 초중고에서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자주 접하면서 그 속에서 통용되는 혐오표현 등을 재미있는 말로 인식하고 일종의 놀이나 장난, 혹은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학교 내 다문화학생 및 장애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의 문제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각종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급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79,403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혐오표현 예방교육의 경우, 기존의 각종 의무교육(학교폭력, 인권, 장애, 양성평등, 다문화 교육 등)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통합적으로 실시하되,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내용에 있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혐오표현의 해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학교현장에서의 학생들은 장애인권에 대한 흥미나 관심 자체가 없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장애는 절대적 타인의 일이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교육현장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일수도 있다. 이와중에 학교에서도 의무상 진행되어야하는 한 번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당에 모여 한 학교 학생 전체 심지어는 800명까지도 듣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반씩의 교육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 학년, 100여명으로 제한해서 교육하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과 서로 시간을 조정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 년에 한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의 교육시간으로 인류(장애)의 역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아이들의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이며 대다수의 학교나 선생님도 인권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에서 학내 혐오표현 문제가 급증하는데 비해,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절차나 시스템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잘못이라는 인식을 가질만한 교육 기

회가 없고 ', '학생을 지도할 때 공동지침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이 없이 학생을 지도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이한 태도를 보일 소지가 많다'는 등, 상다수가 혐오표현에 관한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교육의 실시나 피해 사례 발생 시, 대처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의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누구도 배체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을 통해 그들의 친구 및 성인들과 시민성에 기반한 관계맺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안전한 환경에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다양성의 문화를 개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인권/인식개선/장애의 이해란 수업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장애를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고 실제적인 장애체험이 장애를 이해하기보다 두렵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거꾸로 심어주기도 한다.

- 장애유형별 학우에 대한 고려사항을 오히려 무시하고 따라하거나 영화 기봉이, 7번방의 기적을 실제로 따라하는 아이들의 경우를 볼 수도 있다.

- 불편함을 약점으로 관련수업 중에 장애학생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교육을 마치고 돌아서는 강사의 뒤에서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오표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혐오도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여, 구성원들 사이에서 혐오표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학생 집단이 늘어남과 동시에,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학생집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차이가 난다.

설문조사 결과, 혐오표현이 심각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 가까이 나왔으나, 주관식 응답이나 FGI 참석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동료 교사의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다.

혐오표현의 유형가운데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유형의 혐오표현을 중심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멸시·모욕·위협하는 표현이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의 경우, 이미 학교폭력이나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뿐더러, 이러한 유형의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 등이 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담겨있는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초중등학교의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에는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이 되는 소수자에 대한 정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혐오표현은 전형적인 혐오표현과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소수자를 모욕, 비하하거나 차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수자가 아닌 친구와 싸우면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위한 놀림욕설의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동료집단에서 통용되는 지배있는 유행어로 사용된다.

4) 혐오차별 교육은 다름은 같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알도록 해야하는데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장애를 부각하는 것은 어느 특정집단의 특혜, 특별의식에 대한 상황을 높이는 상황이 되어 장애인들에게는 특권처럼, 비장애인들에게는 손해보는 상황이 느껴지는 느낌이 되어 반감을 놓이는 반작용을 낳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배려를 가장한 배제가 되고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며 친절한 차별이 또한 배제를 만들기도 한다.

혐오표현의 사용을 징계나 처벌로 바로 연결하기보다는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해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혐오표현 사용자를 고립시키는 등,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학교의 문화를 조성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교육의 내용 역시, 혐오표현을 단순히 사용하지 말라는 계몽적인 방법이 아닌 소수자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 또한 학교에서 장애인권교육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시간을 달리하여 따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 역시 학교측이나 교사들의 차별과 배제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인권의식의 가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교육현장의 지도자 즉, 학교장, 교사, 부모, 자원봉사자들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학교의 학생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으로,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장애 및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소수인, 장애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 권위주의적인 생각들로 기성세대들이 바뀌지않으면 학교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다시 혐오와 차별을 하는 사로를 가지게 되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장 등 학교의 관리자는 학교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포용성, 반차별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FGI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에 따르면, 학교장 등 관리자들의 경우, 학교의 문화를 조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과 교사를 관리하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학교의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학교장 등 관리자가 적극적이며 실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관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의무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내 혐오표현의 예방과 대처방법 등,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장 등 학교의 관리자들이 혐오표현 예방의 실질적 책임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이나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안과 유사하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효과적인 혐오표현의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교사 및 전체 교직원, 관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먼저 혐오표현의시 ㅁ각성과 해악에 대해 공감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공통된 이해를 갖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6) 다름과 차이, 차별에 대한 상식을 교육현장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학부모와 사회와 언론 등 아이를 둘러싼 외부환경부터 변해간다면 머지않아 〈인권〉이란 단어조차 생소해지는 결과를 얻지않을까 싶다.

거듭 논의되는 것이지만 혐오표현의 문제는 비단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 사이, 혹은 동료 교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은 수업 중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발화하는 경우나 교직원 회의나 사적 대화중에 드러나는 편견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혐오표현은 상당수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규제되지 않았으며, 교사의 교육철학에 기반한 교육 행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 사이에서 혐오표현이 명백히 차별이나 배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행어나 재미있는 말로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언어가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권력과 힘의 위계를 따라 교사-학생 사이, 혹은 동료 교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은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해악 역시 크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에서는 혐오표현의 정의나 유형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Ⅳ. 맺으며

우리는 이미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지역, 직업, 연령, 계급 등 다양한 특징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어느 한 집단이 표적이 되어 차별로 인한 극한 상황에서 혐오의식을 갖게되고 집단성을 이루어 개인의 삶이 피폐되고 사회의 불안이 조장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해악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혐오표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 결과, 현재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에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각 영역에서 혐오표현의 확산과 해악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이 미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에 확인된 다음의 사항들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혐오표현에 관한 교육훈련 기회 역시 부족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초중고 및 대학의 경우 학생 대상 교육훈련과 교직원 대상 교육훈련과 교직원 대상 교육훈련 모두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대상 교육훈련이나 교수·직원 대상 교육훈련 기회가 높지 않았다. 정부기관 공무원·직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 기회가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언론사 기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단 또한 교육훈련기회는 매우 적었으며, 기사 내용의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부·지자체 직원들 역시 혐오표현의 경우 그런 기준이 없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제고하여 국가적인 정책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좀 더 구체적인 혐오표현의 가이드라인 제정, 교육의 방법 등을 연구하여야 겠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부터 인간존중, 인식의 변화의 뿌리부터 생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겠다. 또한 사회에서의 인식전환이 확산되도록 매체를 활용한 전국민 교육, 성인(특히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발제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혐오차별과 교육

유한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뜻마을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 거주시설의 혐오차별과 교육

유한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뜻마을 원장)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근본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서 우리사회는 누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마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지적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장애인을 단순히 머리가 모자란 사람, 정신과 행동이 이상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지능검사를 근거로 했을 때 IQ가 일정수준(대개 IQ 70)이하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며, 사회적응의 성패여부를 근거했을 때 정상적인 환경에 의해 적응능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감독, 통제 또는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정신발달 상태 또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일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나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타인의 감독, 통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뇌 손상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나 성질에 기초를 둔 정의를 말하면 정상적인 두뇌 발육이 지장(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을 받아 정신발달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람을 말 합니다.

미국 정신지체협회(AAMR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2001)에서는 "지적장애란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질적 적응기술에서 상당한 제한이 나타나는 장애이며, 이는 18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생동안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 에서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정도이며 대부분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상태에 이르기 까지 그 정도가 다양합니다. 저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한뜻마을의 경우에도 독립적인 일생생활이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생활에서 직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의 거주인부터 직장생활도 하고 이성교제도 하며 많은 부분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에 해당되는 거주인까지 다양한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사회는 누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며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이러한 모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인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수반되는 언어능력과 통찰능력, 그리고 판단력 등이 결핍되어 있고, 후천적인 경험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사회성 발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적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사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금까지 지적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우둔, 백치, 정신결함, 정신장애, 정신박약, 정신지체 등으로 변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이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에서 평가 절하 받으며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인권침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라고 불리는 사람도 스스로에 대한 낮은 기대를 그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이처럼 정신지체인 이라는 용어가 이들의 지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성을 빼앗아 가는 장벽과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정신지체인에 대한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29일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단시일 내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2006年12月 13日)'이 발효되고 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2008年4月11日시행)'과 '장애인복지법(2008年2月29日시행)'이 개정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설의 거주인과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거주인 본인의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매장 안에서 옆에 있던 한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가 거주인 근처에 있자 '가까이 가지마!'라며 자녀의 손을 확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주인을 위 아래로 훑어보는데 마치 가까이 하면 아이가 병이라도 옮을 것 같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에게 '아니 장애인이랑 가까이 있다고 무슨 병이라도 옮습니까?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아니에요.'라고 말을 얼버무리고는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거주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긴 채 말입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기에 불편한 존

재로 인식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편견은 과학적이지 않은 선입견에서 출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말하며, 차별은 불평등한 대우를 통해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가리키는 말로써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및 반응은 사람들의 특성이나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안타깝게도 대개 부정적인 편입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보다 혐오와 차별, 편견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경우 지속적인 재활이 요구되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언어, 특이한 정서반응, 예측하기 힘들거나 퇴행된 행동들로 인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서 어려움을 겪어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보다 더 많은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역시 우리 시설 거주인과 함께 식당을 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뭔가 다른 외모와 식사 중에도 비합리적인 언어(‘단순비명’이나 ‘우와’, ‘우우~’ 등의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거주인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가면 입구에 들어서서부터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까지 주위 사람들의 비호의적인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일쑤이며 이제는 이런 경험이 워낙 많아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10여년 전에는 저희 시설 직원이 거주인분들과 식당에 들어갔는데 1,000원을 주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주인의 말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싸움이 될까 우려되어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말을 듣고 분노한 적도 있습니다.

거주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자리를 안내 받을 때 많은 식당들이 편한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지만 홀이 아닌 방으로 안내 하거나 식당 구석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식당 주인이 저와 거주인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고 오붓하게 식사를 하라는 배려였겠지요?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믿고 싶

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적장애인이 여가생활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적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파크골프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일한 골프 말입니다. 혹시 잠깐이라도 '시설 지적장애인이 무슨 골프를 쳐?', '굳이 비싼 돈 쓰면서 골프를 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최초로 지적장애인 골프단을 창단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골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급 레포츠라는 인식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특히, 시설 지적장애인들이 골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적장애인은 파크골프만 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도 하기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골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파크 골프가 아닌 일반 골프를 할 수 있다.'라는 역발상에서 출발하여 한뜻마을의 지적장애인 중 골프를 하고 싶다는 몇몇 장애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골프단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뜻마을 골프단을 창설하고 연습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고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골프를 할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골프단이 처음 활동 할 때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필드 골프에 나가면 저희를 향한 호기심 어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한뜻마을의 거주인들은 꾸준하고 열심히 골프를 연습하였으며 이윽고 지적장애인 골프선수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골프를 통해 '지적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남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 골프선수 등록을 위해 장애인골프협회에 문의를 하였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골프선수로 등록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 알아보고 회신을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이러한 답변은 일년이 넘게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골프협회에서도 시설 지적장애인이 골프를 한다는 것을 낯설게 여기며 지금까지 지적장애인들은 파크골프를 했었다며 도리어 저희에게 파크골프를 추천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장애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장애인을 잘 안다고 생각되는 우리조차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한계를 정하고 '지적장애인은 일반골프는 어려우니까 못할 거야. 파크골프를 해야해'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 아닐까요?

저희 한뜻마을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주인들의 골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차례 골프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골프활동에 대한 지적장애인들의 꿈을 이루었으며 거주인들의 골프실력 역시 일취월장해서 이제는 남을 가르칠 정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시설 지적장애인의 자주적 인권보호를 위한 지적장애인 인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 이야기를 논하지 말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장애인 본인이 인권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시설에 가서 강의도 하는 인권강사가 되고 동료상담가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거주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동료상담가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경험한 후에 더욱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의 능력에 편견이나 차별 없이 우리와 동일하게 대하고 기회를 제공하였을 때 이들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장애인들의 한계를 자신의 기준으로 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정도 서비스를 지원하면 되겠다.', '이 사람은 이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미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장애인을 맞추지는 않으셨나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도 17세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광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다이아몬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 오늘날 최고의 보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7세기말 이탈리아에서 연마방법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장애인도 아직까지 연마방법을 찾지 못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 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장애인의 세공사가 되어 그들이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기술훈련과 직업재활훈련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상담전문가, 조리원, 위생원,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장애인의 재활이라는 목적을 위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며,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자립이 불가피 할 경우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원 가정에도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생활터전으로 집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제한되어 있지만 입소를 희망하는 지적장애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한뜻마을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건 이상의 입소 상담 문의 전화가 옵니다.

입소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도 158명이 될 정도로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입소정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입소 상담 전화가 오면 당장 입소가 어려우며 언제 입소가 가능한지도 안내가 어렵다고 말씀드려야합니다. 그중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정이 급한데 도저히 입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찾을 수 없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전화도 다수 있어 입소 대기자 등록 외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들 역시 그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학대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서 인강원, 희망원, 최근에는 성심재활원의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사건의 연속으로 인해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었으며 이는 인권유린 사건이 있었던 몇몇 거주시설이 아닌 모든 거주시설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정말 극 소수의 시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극소수의 시설을 가지고 마치 모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 한 것처럼 잘못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명감을 가지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정말 허탈하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님비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님비는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로 인하여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것을 꺼리는 현상'이라는 뜻으로 'not in my backyard : NIMBY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라는 지역이기주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님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대전 유성구에 중증장애인 시설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모 사회복지법인이 유성구 하기동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건립하려고 하자 이곳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4월 착공에 나섰지만 주민들이 입지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구에 집단민원 제기 및 공사를 막는 행동으로 인해 시설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집값이 떨어진다.''장애인이 우리 동네에서 생활하면 불안하다.'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동네에는 절대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며 결사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많은 주민들은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이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혐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들이 거론될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이슈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한 사회 안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들을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무리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개발하고 수용해주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이유는 주거지 주변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들어서면 본인들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주택의 가치는 주택 자체의 특성 뿐 만 아니라 주거지 주변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에 쾌적성을 높이는 시설들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본인들의 생활공간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반면에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의 경우 본인들의 생활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혐오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님비현상이 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발전소, 교도소와 같이 환경피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발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p.161) 생물학적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사회·경제학적으로 심미적인 환경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집이자 보금자리인 시설이 도대체 어떠한 피해를 주었길래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희 시설의 거주인들은 지역사회 축제에 참여하고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도 하며, 큰 도로에 나가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하며 지역 내 독거어르신을 찾아뵙고 물품을 도와드리는 등 20년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받고 나아가'혐오'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 아닐까요?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이 본인의 거주지에 생활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로 "주변에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장애인의 행동이나 표현을 따라하는 등 자녀 교육상 나쁘다.", "장애인은 절도나 기물파손, 우발적 폭행 등 범죄나 사고를 저지를 수 있어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꺼리고 이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받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는 것은 이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설 거주인의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녀와 집에서 몇 일을 함께 보내는 것 마저 쉽지 않다고 말씀 하십니다.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몇 일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문 밖을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 중에 노골적으로 불

쾌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행여 자신의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마음이 시커멓게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펜션을 빌려 그곳에서 자녀와 하루를 보내고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과 편견어린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의 자식 세대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에서 '장'자를 뺀 '애자'라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매우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우리가 장애인을 무의식중에 비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로 장애인 대부분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는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가 또래 친구들에게 자신의 부모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뜻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송○○씨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시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마저도 장애를 가진 엄마를 창피해하고 싫어하게 되면서 혹시나 내 자식이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봐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족과 떨어져 시설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송○○씨는 오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명절이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씨는 지적장애인이기 이전에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김○○씨 역시 지적장애인이기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딸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족처럼, 보통의 사람처럼, 가족과 함께 사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지적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삶 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각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분리되어 생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주거지에서의 생활뿐 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공무원, 근로자)와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입니다. 그러나 2018년 고용노동부 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 이행 비율이 55.7%,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의무 이행 비율이 45%이며 특히 1,000명 이상의 기업은 23.9%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독일, 일본 등에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을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이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 보다는 벌금을 내고 채용을 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어려우며 무능력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회적인 차별이 넓게 퍼져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정말 무능력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할까요? 한뜻마을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거주인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섭니다. 이중에는 직업재활 시설에 가서 단순 포장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서 빵과 쿠키를 만드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육가공 공장 생산직으로 3명의 지적장애인이 취직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회사에 출퇴근도 하며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 담당자는 이들이 업무 집중력도 높고 작업수행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적장애인 중에 본인의 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직장생활을 매우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생산자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직장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며 일이 많은 날에는 야근을 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와 친목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무능력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회를 주지 않고 박탈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 생활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영역으로부터 분리되고 배척되어 왔던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에게 바르게 이해되기란 어려울 것이며, 장애인의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게 되는 이해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혐오와 차별을 타파하고 지적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구제절차가 법,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 제도적 차원에서 통신, 사생활, 종교의 자유 등 이들의 인권을 위한 모든 자유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장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들의 권리가 선언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장애인들 상당수가 사회와 격리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오다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1997년 시행)되어 그나마 국가 정책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 상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더 나은 지적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시설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 의료서비스(지적장애인과 가족중심의 치료, 예방과 재활, 회복과 사회복귀위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역사회로 부터 격리와 시설보호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입니다.

혐오, 차별로부터 지적장애인이 벗어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 역시 이들을 나와 같은 이웃으로 인식하고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장애인이 한 번 입소하면 평생을 살아갈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시설에서 계속 생활을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도 있겠지만 적절한 재활훈련 및 자립 지원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까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시설에서의 생활이 장애인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 시설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 대규모 재정소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적장애인의 자립 실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적장애인 시설, 지적장애인 자조모임, 한국 피플퍼스트 등이 지적장애인에 대

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한 권익운동이 활성화 된 단계는 아닙니다.

국가는 이러한 조직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적장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과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하면서 지적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해 배우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해 얻는 정보는 뉴스,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자극적인 사건들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며, 언론매체에서의 지적장애인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 비추어지는 나약하고 피해자의 모습으로 지적장애인을 인지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비춰지는 장애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장애인들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도 장애인의 특성 및 이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식을 지역주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설 자체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편견과 차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지적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용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은 비단 지적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두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발제 3

장애인 혐오차별 관련 보도 현황 및 표현법의 문제

이권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 혐오차별 관련 보도 현황 및 표현법의 문제

이권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1. 들어가며

요즈음 우리 사회는 혐오(嫌惡)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혐오표현이 일상화되어 있다. 된장녀, 한남충 등으로 대표되는 혐오표현이 저급한 인터넷에서나 사용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언론이나 공중파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사용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을 만큼 일상활 되어 특정집단만의 문제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의 실제 사건으로 벌어져 우리를 경악하게 하기도 한다.

매년 연말이면 SNS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이 그해에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사가 보도되고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었는지에 대해 각종 통계를 분석하여 '이슈 톱 10' 등의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를 발표하는 매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8년도는 혐오(嫌惡) 또는 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키워드가 대체로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트위터가 '키워드 및 계정분석'을 통해 사회, 정치, 음악, 게임 등 분야별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10가지 이슈'[1]를 정리해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 2018.1.1. ~ 11.10. 글로벌 트위터 데이터, 다음 소프트 데이터 분석

〈트위터로 보는 2018년 이슈 톱 10 - 사회분야〉

순위	키워드	해시태그
1	스쿨미투	#교사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With You
2	페미니즘	#양성평등사회, #탈코르셋
3	몰카	#공공장소 몰카, #몰카 유통 웹하드
4	혐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젠더갈등 격화
5	드루킹	#포털 댓글조작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모?
6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마스크 필수
7	남북정상회담	#4·27 판문점 선언, #옥류관 평양냉면
8	최저임금	#6,470원 → 7,530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9	혜경궁 김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10	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투표율60.2% 23년만에 최고치

2. 장애인 혐오

혐오는 사전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매우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수준이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감정상태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차별과 폭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장애인 혐오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는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지역사회에 발들이지 못하게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사회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의 중재 또는 해결을 위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7년 장애아동 부모들이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에게 무릎 꿇고 호소〉

〈2015년 동대문구 중학교 빈 건물에 발달장애인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천막농성〉

위의 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고, 둘째는 '혐오가 아닌 듯 다루는' 보도 때문인데, 전자는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후자는 혐오논리를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주민들이 발달장애인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반대한 이유는 그 곳 중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직업체험센터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있어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거였다. 발달장애인은 '범죄자'라는 논리가 전제돼 있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범죄 비율은 매우 낮은데도 말이다. 실제는 어떨까?

〈각종 언론의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왜곡 및 조장사례 〉

2015년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 2016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자수[2]는 68.2명이지만 정신질환자 10만 명당 강력범죄자수는 절반에 못 미치는 33.7명이다. 전체 범죄 184만 7,605건 중 정신질환자 범죄는 7,535건으로 0.41%이며, 전체 강력범죄 2만 7,071건 중 정신질환자 강력범죄는 652건으로 2.41%에 불과하

2) 강력범죄 :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정신장애인 범죄비율은 전체를 봤을 때 아주 미미하지만, 각종 미디어 및 언론에서는 정신장애인 범죄만 집중보도하거 강조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을 갖게 된다.

〈대검찰청·경찰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체 범죄 대비 정신장애인 범죄 비율〉

이렇듯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장애인의 이미지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발달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미지에 범죄, 폭력, 돌발행동 등이 겹쳐지면서 수많은 오해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왜곡된 이미지는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아닌 장애인의 분리·배제·격리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매뉴얼로 장애인을 사건사고의 유일한 원인처럼 기술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균형감 있는 기술과 보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 폭력, 총기사고, 자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법망을 빠져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이상 증상 또는 정신병력 등을 내세우거나 범죄행위 전에 정신과 진료 또는 약물처방 기록을 남기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6년 8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만15세~59세 성소수자·여성·장애인·이주민과 소수자가 아닌 남성 각 200여 명씩 총 1,0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대면조사를 벌였고, 그 실태보고서를 2017년 2월 19일에 발표하였는데,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의 구체적 사례이다.

"일 년 전쯤 전철역에서 남자친구(비장애인)랑 같이 다니는데 환승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백발의 중년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서는 옆의 남자친구를 쳐다보면서 '어떤 관계야'고 묻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 친구인데요'라고 하니까, 지금도 생각나요. 낯빛이 확 바뀌더니 '어? 부모님 가슴에 못 박히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그때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그 여성의 눈빛이 살기 비슷하게 느껴져요. 저에겐. 그리고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야지'라고 해요. 이제 저도 남자친구도 너무 놀라서 말문이 순간 막혀 버린 거예요. 남자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허' 하고 웃으니까. '웃어?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화를 내고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셨어요."(지체장애인 여성)

"지하철에서 술 취한 남성이 제게 말을 걸더니 '희망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어디서 내리시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내린다' 하더니 내리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고 내리는 거예요. 이건 성폭력인데. 너무 놀랐어요."(지체장애인 여성)

또한 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비하와 혐오가 확산되면서 장애인들은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200여 명의 장애인 중 70.5%가 '자신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95%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온라인 뉴스 댓글이 78.5%,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가 73.7%, SNS가 73.3% 등이었다.

이 외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의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 서천군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A씨가 2018년 9월 10일에 같은 군청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같은 군청에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장애인 B씨의 업무능력을 비난하며 '냄새난다.'고 비하했으며, 장애인이란 이유로 업무상 배제를 암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단순한 일은 못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전화확인이나 단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공무원 A씨의 장애인 비하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은 즉각 반발했고,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청은 10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2018년 10월 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서울의 한 분식집 주인이 장애인 손님을 상대로 비하표현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올라와 3만 건 넘게 공유되며 논란이 되었다

남성 노인과 남성 장애인(자식) 손님이 김밥 포장 문제로 다투고 나가버리니 가게 여주인이 '성깔이 저러니 병신 낳아서 달고 다니지'라며 계속 욕하길래 제가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랬더니 저더러 나가라고 삿대질하고 남주인이 와서 음식 안판다고 제 먹던 그릇 던져 깨버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가 자리를 이탈했고 목격자 증언이 없어 고소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3. 여성 혐오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바 대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미천한 관계로 2015년 12월 '함께걸음'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께서 기고하신 '인권이 던진 질문들 : 혐오가 확산되는 한국사회'라는 제목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근대 혁명 이후 인간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존재로 여겨진 여성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다. "여성은 날 때부터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할 뿐더러 이성적인 사유능력도 떨어진다."는 생각은 서양철학의 기본 사고였다. 심지어 프랑스는 개인은 모두 자유롭고 여성도 자유로운 개인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위치, 즉 타자로서의 위치를 가져야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동등한 선거권을 1945년에 획득할 정도로 심했다. 여성은 언제나 딸이거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즉 남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혐오는 여성 혐오와 닮아 있다. 사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여성 혐오는 혐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원본이다.

일간베스트사이트 유저(이하 일베)들 이외에도 공인들에 의한 여성 혐오 발언이 늘어나고 있어 '여성혐오'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가 되고 있다.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여성 혐오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을 감싸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 한 예이다. '발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실수로 수위를 넘어서 막말이 된 과한 표현'이므로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다. "뭘 그렇게 오버하는가!"라는 식으로 혐오 발언의 주체가 지나

친 비난을 받아 마녀사냥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전도시킨다. 앞서 말했듯이 혐오란 특정 집단을 열등하거나 문제적 존재로 보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경멸이다.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의 표현처럼 여성을 "시시하고 불결하며 이해 불가능한 생물"로 여기며 동등한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가 아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여성의 타자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여성 혐오이다. 나아가 '김치녀'라는 일베들의 묘사처럼 여자는 "남성의 돈을 밝히고 남성을 경제력으로 평가하고 남성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며", 무임승차하는 존재로서 남자의 이익을 갉아 먹는 존재가 된다. 동등하지 않은 존재가 불이익까지 준다고 여기는 논리는 여성 혐오를 부추긴다. '삼일한'(여자는삼일에 한 번 패야 한다)이라는 일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혐오 범죄까지 당연시하고 있기에 심각하다.

일상적인 혐오 발언으로 혐오 받는 존재들의 권리는 사라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차별 비하 표현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4건에서 622건으로 15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세계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세계 116위(0.55점)로 조사됐다.

4. 문제점

이와 같이 장애인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차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피해규모 등 악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혐오표현과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가에게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만큼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듯 사회전반에 걸쳐 혐오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고,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는 혐오와 차별의 적극적인 동조자가 되기도 한다.

>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의 문제에 있어선 더욱 그렇다. 사월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단속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에선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제단속을 계속한다며 포장만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도 이주노동자를 적극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그는 "(복지부의 정책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하고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비숙련 노동직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곳에 고용허가를 내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도 많다"고 지적했다.(한겨레신문, 혐오와 차별은 정치권의 침묵을 먹고 자랐다. 2018.12.04.)

장애인에 대한 경멸이 증오로 둔갑하면서 혐오주체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따르는 도덕 감정상의 망설임, 멈칫거림, 갈등 등은 소거되고 한층 더 집요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작 장애를 둘러싼 권력관계나 차별구조는 은폐된 채 '공리주의적 효용론'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차별과 배제는 수평적 민-민 갈등으로 왜곡된다. 피해자는 '분별없는 사익 주체'로 돌변하고 오히려 문제유발자로 낙인찍힌다. 그래서 죄송하다. 국가는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갈등의 중재자로 개입함으로써 마치 공공적 사명을 다하는 양 둔갑한다. 바야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리바이어던 국가'의 중재와 통제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인유발자, 가해자, 책무자는 면책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해 하고, 정작 피해자는 원인유발자인 것처럼 죄송해 해야 하는 피해자 유책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넘쳐나지만 침묵한다. 혐오를 혐오라고 부르지도 않으며 혐오가 생산되는 규범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이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것을 줄이는 전략 역시 관찰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상과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정보제공, 접촉 기회제공, 차이 감소 전략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경제적 격차, 교육 기회의 격차, 고용율과 임금 격차 등)를 줄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를 관용하는 분위기에서 장애인 혐오는 노골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그를 활용하고 있는 정치권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에서 혐오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 혐오를 혐오라 말하고 혐오를 규제하는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함께걸음, 2015.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의 대응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키울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이 가해질 위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적합한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 설정이 혐오표현 규제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제 등의 다양한 입법적 대응과 함께 혐오표현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차별의 개념설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차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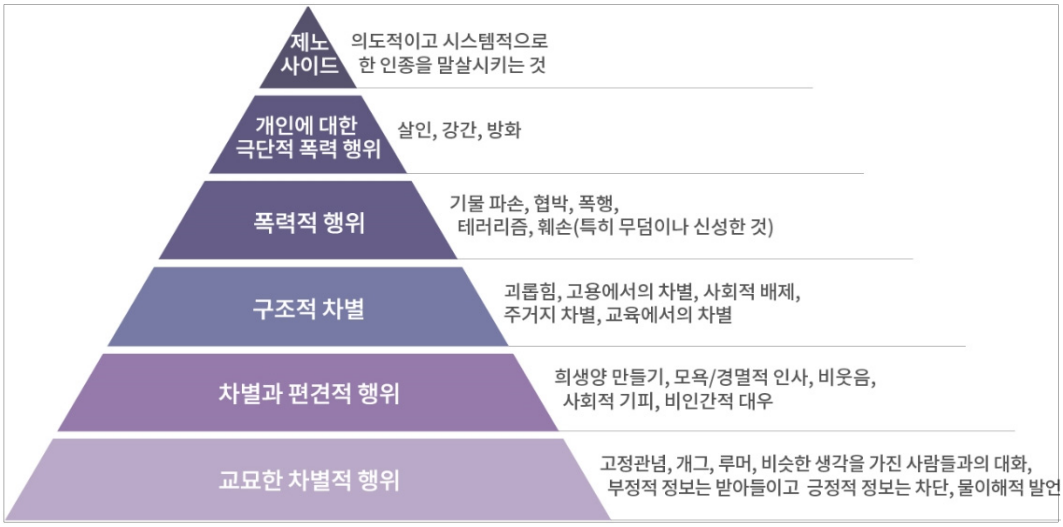

〈혐오의 피라미드〉

예를 들면,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3(장애인 학대) 규정을 두어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의견표시, 모욕·조롱·위협,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대·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고취·선동하는 것 등의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32조의 괴롭힘(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집단따돌림, 모욕감,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 등의 금지조항을 두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괴롭힘 또한 피해대상을 개인에 한정할 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의견표시, 모욕·조롱·위협,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대·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고취·선동하는 것 등의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해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옹호와 반대의 입장이 아직은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쪽은 혐오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자신감 자부심 상실 자책 등의 고통을 받고, 전염성이 강하고 후대에 전승되

거나 조직적 차원으로 확산되며,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쪽은** 표현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추상적, 일반적 의견이나 상징적 암시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경우 법망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 금지가 법적 처벌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법적 금지는 사회의 담론이 합법·불법표현으로 단순화 되어 다양한 가치판단이 왜곡되고 그 원인인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은 도외시 되어 혐오표현 발화자 처벌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어찌됐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광범한 혐오표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확산되고 있으며, 특정사건을 계기로 남성혐오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자칫 성별대립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혐오는 차별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사회적 약자가 강자에게 혐오표현은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정책집행이 필요할 것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발생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 지금처럼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2018년 12월에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 혐오가 만연한 곳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박탈당한다. 차별은 정당화되고, 평등이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은 가치도 설 자리가 사라진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행 법 제도 안에선 차별 행위의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뿐이란 한계를 지적했다. 이 때 입증책임은 오롯이 차별을 받은 사람에게 전가된다. 조 위원장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상대적 약자이고 차별에 관한 증거가 (반대로) 차별을 한 사람의 지배영역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전히 차별의 존재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차별피해 소송지원 기금 및 차별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혐오의 문제는 그저 집단과 집단 사이의 평면적인 갈등의 문제로 오인되기 쉽다"며 "2018년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들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제도화하는 법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강조했다.

5. 참고자료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부설기관으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 의정활동, 장애인 예산, 장애인 법률(조례 포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장애계 핵심이슈 또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국내 언론의 장애관련 보도현황 및 표현법의 문제'라는 주제로 10대 중앙일간지가 장애관련 기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참고자료로 첨부하고자 한다.

□ 조사목적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3]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차별 인식〉

(단위: %)

구분	2005년	2011년	2014년	2017년
없다	13.3	19.3	27.4	20.1
있다	86.7	80.7	72.6	79.9
계	100	100	100	100

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에 따르면, 장애 문제 해결하려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53.8%)는 의견이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46.0%) 의견보다 많았다.[4]

3) 김성희 외(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 한국갤럽(2001), 한국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서울문화사.

이처럼 장애인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언론을 통해 간접 전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장애를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의 장애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커녕 오히려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실제 언론에서 보도된 장애인 관련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중시키고, 장애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지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유명한 장애인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대다수의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5)]

이 글은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장애 관련 기사를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사별로 장애인 관련 보도 형태를 비교 분석하고 기사의 관점과 표현법을 분석한다. 물론, 이 같은 분석의 목적은 언론의 장애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시선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조사방법 및 시기

중앙 일간지의 장애인 보도형태 및 표현법에 관한 모니터링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담당 연구원과 장애인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원들이 신문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아이서퍼(www.eyesurfer.com)에 접속하여 장애관련 기사나 왜곡된 표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모니터링에 사용한 주요 키워드는 "장애", "자폐", "발달", "희귀병", "다운증후군", "특수교육", "특수학교", "휠체어", "목발", "편의시설",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이동권", "유니버설디자인", "농인", "농아인", "벙어리", "맹인", "장님", "절름발이", "장애우", "앉은뱅이", "기형아", "미숙아" 등이다.

---

5) 이수성 외(2008), 2008언론모니터보고서: 공공저널리즘과 장애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조사대상

주어진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조사 대상 언론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10대 중앙 일간지에 국한하였다. 인터넷 기사는 배제하고 지면 기사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하나의 기사가 복수의 지면에 실린 경우에는 기사 한 건으로 계산하였다.

□ 장애관련 기사의 기준 및 범위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장애 관련 기사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15가지 법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정신질환 관련 기사는 정신장애 관련 기사로 보고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셋째, 장애관련 기사라고 하더라도 평가할만한 가치가 없는 단신이나 장애가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넷째, 장애관련 기사라도 기업이나 기관의 광고성 기사(에드버토리얼)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여러 집단을 동시에 다루는 기사의 경우 큰 제목과 작은 제목에 '장애'기 언급되거나 기사 내용이 '장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시켰다.

□ 보도된 기사의 양 비교

10대 일간지가 지난 9개월 동안 장애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양을 월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10대 일간지가 지난 9개월 동안 보도한 기사의 양을 모두 합치면 2,104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1〉 언론사별 장애관련 기사 보도의 양(2018. 3~11)

(단위 : 건)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경향	77	37	9	7	17	15	19	29	15	225
국민	94	48	13	26	20	26	28	38	19	312
동아	72	28	14	13	7	18	17	17	15	201
문화	63	16	7	11	12	6	15	24	22	176
서울	95	33	15	16	12	18	17	27	9	242
세계	52	33	14	9	14	16	12	22	17	189
조선	92	14	6	13	10	15	13	28	16	207
중앙	47	10	6	15	7	5	6	7	5	108
한겨레	81	26	5	11	11	15	20	32	16	217
한국	63	19	14	21	21	11	20	38	20	227
계	736	264	103	142	131	145	167	262	154	2,104

우선, 신문사별로 보면. 국민일보(312건), 서울신문(242건), 한국일보(227건) 순으로 보도량이 많았다. 그 뒤를 경향신문(225건), 한겨레신문(217건), 조선일보(207건), 동아일보(201건)가 이었고, 세계일보(189건), 문화일보(176건), 중앙일보(108건)는 보도량이 제일 적은 신문에 속했다. 국민일보의 보도량이 가장 많은 까닭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신문의 특성상 '종교면'이 별도로 있고 이곳에 장애관련 기사를 집중 배치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의 경우 '종교면' 실린 장애관련 기사(대부분 '기사'라기보다 신앙 전도를 위한 '소식'에 가깝다)를 제외하면 중간 정보 보도량에 그친다.

따라서 국민일보를 예외로 두면, 신문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도량에서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다. 즉,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같은 중도 성향에 가까운 신문들이 장애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실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같은 진보 성향의 신문이 중간에 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신문이 가장 적게 실었다. 다만, 이런 경향이 2018년에 나타난 특별한 경우인지 매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 이 수치는 어디까지는 보도된 기사의 양에 국한된 것이고, 기사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신문이 장애관련 기사를 가장 잘 보도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또 월별로 살펴보면, 패럴림픽이 열렸던 3월이 73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는 264건이다. 이후 기사의 양이 크게 줄어 5월 103건, 6월 142건, 7월 131건, 8월 145건, 9월 167건, 10월 262건, 11월 154건이 보도되었다.

□ 보도지면 비교

10대 일간지가 장애관련 기사를 어느 지면에 보도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1면', '종합',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스포츠', '문화', '인물', '건강', '오피니언', '특집/기획', '기타'(국민일보의 '종교면' 포함) 등 13가지로 지면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9개월 동안 10대 일간지가 보도한 기사 2,104건 가운데 스포츠면(490건, 23.2%), 사회면(375건, 17.8%), 기타면(307건, 14.5%), 인물면(216건, 10.2%) 순으로 많았다. 이어서 오피니언면(207, 9.8%), 특집/기획면(105건, 5.0%), 문화면(91건, 4.3%), 1면과 종합면(각각 86건, 4.1%), 경제면(71건, 3.4%) 순이었다. 반면, 건강면(29건, 1.4%), 정치면(25건, 1.2%), 국제면(16건, 0.8%) 기사의 양은 아주 저조했다.

〈표 2〉 장애관련 기사 보도지면(2018. 3~11)

(단위 : 건)

구분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1면	16	8	5	6	10	4	5	4	12	16	86
종합	16	7	6	6	9	9	7	8	8	10	86
정치	3	2	1	1	8	1	5	0	4	0	25
사회	40	77	26	17	46	34	40	9	26	60	375
경제	8	7	11	13	7	6	4	6	5	4	71
국제	1	1	4	3	1	1	2	2	0	1	16
스포츠	61	40	46	45	56	42	77	18	65	40	490
문화	7	7	6	24	6	11	8	3	13	6	9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인물	7	41	18	23	30	19	21	16	10	31	216
건강	4	7	1	2	0	3	3	2	0	7	29
오피니언	34	27	20	5	19	15	16	18	41	12	207
특집기획	13	12	11	6	9	18	8	8	6	14	105
기타	15	77	46	27	41	29	11	14	27	20	307
계	225	313	201	178	242	192	207	108	217	221	2,104

위 〈표 1〉에서 '스포츠면'의 보도량이 가장 많은 이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지만 2018년 3월에 열린 평창패럴림픽의 영향 때문이다. 아울러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면'의 보도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패럴림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타면'의 보도량이 상당히 많은 까닭은, 앞서 지적했다시피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국민일보에 '기독 뉴스'라는 지면이 있는데 편의상 이 면을 '기타면'에 분류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관련 기사를 신문의 가장 중요한 지면인 1면에 실은 경우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각 1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한겨레신문 12건, 서울신문 10건 순이다. 그리고 국민일보 8건, 문화일보 6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각 5건이고, 세계일보와 중앙일보가 4건으로 가장 적다. 또 관련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는 사설과 칼럼이 실려 있는 '오피니언면'에는 한겨레신문 41건, 경향신문 34건, 국민일보 27건, 동아일보 20건, 서울신문 19건, 중앙일보 18건의 기사가 실렸다. 따라서 진보적 성향의 신문이 상대적으로 장애관련 기사를 더 비중 있고 깊이 있게 보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면', '경제면', '정치면', '국제면'에 장애관련 기사가 더 많이 실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면' 기사의 경우 문화일보가 24건을 보도해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서 한겨레신문 13건, 세계일보 11건, 조선일보 8건 순이다. '문화면'의 보도량을 늘려 최근 장애인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와 욕망에 우리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경제면'의 경우 문화일보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실었고, 이어서 동아일보 11건, 경향신문 8건,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이 각 7건을 보도했다. 장애인 관련 쟁점은 복지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언론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면'의 경우 서울신문 8건, 조선일보 5건, 한겨레신문 4건 순으로 실었고, 반면 중앙일보는 한 건도 싣지 않았다.

'국제면'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도량이 저조한 가운데 동아일보 4건, 문화일보 3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 2건 보도하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조사 기간 동안 국제 뉴스를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 언론은 '국제면'의 보도량을 늘려 국제사회의 장애정책과 운동을 국내에 더 많이 소개하고, 장애관련 쟁점을 국내 사회적 쟁점을 넘어서 국제적 쟁점으로 확산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

□ 기사가 다루는 장애유형 비교

10대 일간지의 장애 관련 기사가 어느 장애 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애 유형을 13가지로 분류하였다. 법정 장애 유형이 15가지지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그리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기사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 '청각언어장애'와 '발달장애'로 유형화하였다. 또 전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기사 또는 두 가지 이상 장애유형을 다룬 기사는 '범분야'로 분류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전체 2,104건 기사 중 '범분야' 기사가 1,145건(54.4%)이다. '범분야'를 제외한 959건의 기사를 장애유형별로 분류하면, 지체장애 448건(21.3%), 발달장애 217건(10.3%), 정신장애 101건(4.8%), 시각장애 97건(4.6%), 청각언어장애 44건(2.0%), 뇌병변장애 37건(1.7%), 뇌전증장애 8건(0.3%), 안면장애 4건(0.2%), 심장장애 2건(0.1%), 신장장애 1건(0.04%)이다. 하지만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에 관한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 기사의 초점이 되는 장애유형(2018. 3~11)

(단위 : 건)

구분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지체	44	49	52	41	49	32	61	23	45	52	448
뇌병변	4	8	1	1	1	5	4	3	4	6	37
시각	9	18	10	9	8	9	12	4	9	9	97
청각언어	3	8	1	5	5	4	7	3	3	5	44
안면	0	0	1	0	0	0	1	0	0	2	4
신장	0	1	0	0	0	0	0	0	0	0	1
심장	0	0	1	0	0	0	0	0	0	1	2
간	0	0	0	0	0	0	0	0	0	0	0
호흡기	0	0	0	0	0	0	0	0	0	0	0
장루요루	0	0	0	0	0	0	0	0	0	0	0
뇌전증	3	0	2	1	0	0	1	0	0	1	8
발달	15	51	27	16	21	15	15	10	23	24	217
정신	13	10	9	6	11	10	10	4	7	21	101
범분야	134	168	97	95	145	116	97	61	126	106	1145
계	225	313	201	174	240	191	208	108	217	227	2,104

한편,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가 추정한 한국의 장애인구수는 2,668,411명이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세분하면 지체장애인 1,278,368명(47.9%), 뇌병변장애인 308,855명(11.6%),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309,338명(11.6%), 시각장애인 223,228명(8.4%),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247,189명(9.3%), 정신장애인 116,079명(4.4%) 순이다. 따라서 발달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는 실제 인구비율보다 더 많이 보도되는 반면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장애는 실제 인구비율보다 더 적게 보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 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같은 '신체내부장애'와 안면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6가지 장애유형을 다룬 기사는 모두 합쳐야 전체 2,104건 중 7건(0.3%)에 불과하다. 신체

내부장애인들의 경우 장기이식과 기증자 지원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고, 안면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성형수술비용 문제가 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10대 신문들은 이런 문제를 외면한. 특히,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에 관한 보도는 전무한 상태여서 장애유형간 보도량의 불균형이 심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10대 일간지는 비가시적 장애보다는 가시적 장애에 초점을 맞춘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가령, 신문들은 청각장애보다는 시각장애에, 그리고 신체내부장애보다는 신체외부장애를 보도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도 이른바 '그림이 좋은' 또는 '섹시한' 장애유형에 대한 보도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 기사내용 비교

10대 일간지의 장애관련 기사가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사의 내용을 '노동/취업', '교육/학습', '접근성/편의', '스포츠/레저', '문화/관광/예술', '보건/재활', '소득/생계', '자립/탈시설', '제도/행정', '인권/권리', '인물/인터뷰', '자선/봉사', '기타' 등 12가지 분야로 분류여 비교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10대 신문들은 지난 9개월 동안 보도된 2,104건의 장애관련 기사 중 스포츠/레저(675건, 32.1%), 인물/인터뷰(187건, 8.9%), 제도/행정(186건, 8.8%) 분야 기사가 가장 많다. 이어서 인권/권리(176건, 8.4%), 문화/관광/예술(160건, 7.6%), 접근성/편의(152건, 7.2%), 노동/취업(132건, 6.3%), 교육/학습(110건, 5.2%), 보건/재활(107건, 5.1%), 기타(102건, 4.8%) 순으로 관심을 많이 가진다. 반면, 자선/봉사(64건, 3.0%), 자립/탈시설(37건, 1.8%), 소득/생계(16건, 0.8%) 관련 기사는 가장 적게 보도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4〉 장애 관련 기사 내용(2018. 3~11)

(단위 : 건)

구분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노동/취업	14	25	16	15	19	9	2	8	10	14	132
교육/학습	11	20	16	1	13	10	2	6	14	17	110
접근성/편의	16	17	13	13	26	19	10	5	16	17	152
스포츠/레저	73	72	64	66	83	57	96	32	80	52	675
문화관광예술	14	34	14	15	12	19	14	6	16	16	160
보건/재활	15	11	14	10	6	6	14	10	3	18	107
소득/생계	2	2	0	2	4	1	2	0	1	2	16
자립탈/시설	7	2	0	1	3	2	6	1	9	6	37
제도/행정	26	20	11	11	32	20	11	8	21	26	186
인권/권리	23	35	14	6	17	17	10	4	26	24	176
인물/인터뷰	13	28	20	19	18	20	22	10	17	20	187
자선/봉사	3	24	5	5	2	5	5	5	0	10	64
기타	10	17	11	13	12	7	11	5	8	8	102
계	227	307	198	177	247	192	205	100	221	230	2,104

2018년에 '스포츠/레저', '인물/인터뷰' 관련 기사가 유독 많았던 것은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3월에 평창패럴림픽이 있었고 10월에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분야를 제외하면 제도/행정(8.8%), 인권/권리(8.4%), 문화/관광/예술(7.6%), 접근성/편의(7.2%), 노동/취업(6.3%) 분야 보도가 많고 보건/재활(5.1%), 자선/봉사(3.0%), 자립/탈시설(1.8%), 소득/생계(0.8%) 관련 기사는 적게 보도되었다. 자립/탈시설이나 소득/생계 분야 보도량이 적은 건 다소 아쉬운 대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다양한 장애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표 2〉에서 장애관련 기사를 실은 보도 지면은 다소 편중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신문에 보도된 왜곡된 표현들

● 장애인을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 슬픔의 정조로 묘사하는 표현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신체의 어려움과 사회의 냉대라는 이중고를 뚫고 땀과 눈물을 흘려온 장애인 선수들의 분투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경향	03.09	
2	어렵게 되찾은 삶이지만 신의현은 한동안 ‘죽는 게 낫다’며 실의에 빠져 지냈다...안정을 찾아보고자 사고 이듬해인 2007년 베트남 출신 김희선(31)씨와 결혼했지만, 어머니와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데도 돕지 못하는 신세에 오히려 더 괴로워하기도 했다. 아내 김씨는 “예민해진 남편과 자주 싸웠다. 처음엔 참 혼자 많이 울었다”고 했다. 신의현이 정신을 차린 건 운동을 접하면서다.	조선	03.10	스포츠 29면
3	그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의 삶도 피폐해졌다. 날마다 부모님을 원망하며 술에 찌들어 살았다. 3년 동안 두문불출했다.	한겨레	03.12	2면
4	“장애인 엄마 부끄러웠는데...‘위대한 엄마’ 자랑스럽습니다.” 이도연은 1991년 건물에서 추락해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절망에 빠져 지냈지만...	문화	03.15	인물 29면
5	“‘신의현 땀과 눈물’, 장애인이 더 세상 나오는 사회로”	한겨레	03.19	
6	발달장애는 태어날 때나 자라면서 생긴 뇌 손상으로 정신과 신체 성장이 지체되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대다수가 지능지수(IQ) 50 이하이며, 소통이 어렵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만 되풀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동아	04.12	수도권 20면
7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목발에 의지했던 영문학자 장영희는 ...	세계	04.20	오피니언 27면
8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손상 등으로 대부분 사지 마비 수준의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를 함께 안고 있어 중증 중의 중증 장애인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특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고 스스로 밥을 먹는 건 불가능하다. 생리작용에 대한 의사표현도 못해 기저귀를 사용한다.	한국	06.04	1면
9	1972년 하버드 의대에 입학한 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척수손상으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었다. 사고 이후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했다.	조선	06.23	인물 30면
10	부시 전 대통령은 파킨슨병으로 운신이 어려워진 2012년경부터 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의지해 생활해 왔다.	동아	06.28	인물 32면
11	지체장애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베스(15), 자폐증이 있는 케이티(15)가 한 반에서 공부한다.	경향	07.06	기획 6면
12	오전 6시 바퀴가 달린 '마운틴 보드'에 몸을 의지한 둘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건넸다.	조선	07.30	스포츠 26면
13	“그가 주목받은 것은 80dB 이하의 소음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 3급이라는 불리한 신체조건 때문이다. 일반인의 대화음이 40~60dB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세계	08.01	스포츠 23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4	하지만 서울의 복잡한 도로 상황을 감안할 때 안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듣고 말하지 못하는 대신에 잘 봅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중앙	08.22	종합 16면
15	그녀의 장례식에 94세의 노구를 휠체어에 의지하며 참석한 남편 부시가 착용한 양말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경향	09.05	오피니언 28면
16	현재는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인공달팽이관’에 의지하고 있다. 일반인처럼 완벽하게 들리진 않지만 그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엔 아무 지장이 없다.	서울	09.12	교육/입시/NIE 20면
17	20대 중반의 나이에 망막 이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은 김지연은 그 후 몇 년 뒤 다른 쪽 눈도 빛을 잃었다. 누구보다 활달한 성격을 자랑하던 그는 희귀병으로 장애인이 되자 두문불출했다.	세계	10.09	스포츠 22면
18	류시문 (사)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민실천 회장은 7세 때 왼쪽 다리를 다쳐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중이염을 앓아 양쪽 청력마저 잃어버린 청각장애인이다.	세계	10.13	인물 17면
19	믿음의 집안이었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던 딸은 신학대학생이었다. 멀쩡하던 딸이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한 달간 감기약만 먹였다. 6개월 뒤에야 찾아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이 내려졌고, 부녀는 한동안 신을 원망했다.	한국	11.01	보건/의료 6면
20	화를 못 이겨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쳤다. 산산이 부서져 흩어진 유리 조각들, 그 한가운데 주저 앉은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열아홉 살 딸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자해를 반복하는 ‘미친 딸’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은, 교사 어머니마저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게 만들었다.	한국	11.01	보건/의료 6면
21	아이를 낳고 3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했던 류씨는 상실감 때문에 뉴스도 보지 못했다. 류씨는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고 한다.	경향	11.16	인물 25면
22	그는 옥스퍼드대학 졸업 후 케임브리지대학으로 옮겨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지만 1963년 초 병에 걸렸다. 운동신경질환의 일종인 ALS, 일명 루게릭병이다. 21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다.	세계	11.17	문화/출판 13면
23	석탄을 훔쳐 뛰어내리다가 목발이 수없이 부러졌고 재수가 없는 날엔 경비대에 붙잡혀 목발로 흠씬 두들겨 맞았다. 쪼개진 목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늘어갔다. 그 사이 집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의족과 의수를 구해오겠다며 중국으로 넘어간 어머니와 여동생의 소식도 끊어졌다. 지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문화	11.21	인물 35면
24	김양이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8년이다.	동아	11.29	기획 27면

● 장애인을 초인 또는 감동의 원천으로 과장하는 표현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시력· 다리 잃고도 '우뚝'...인간 승리 드라마 쓴다, 9일 개막 평창 패럴림픽 빛낼 철인 3인	문화	03.07	스포츠 29면
2	'인간 승리' 옥사나 마스터스, 낳자마자 버려진 '체르노빌 원전' 그녀... 세상의 희망이 되다.	조선	03.08	스포츠 24면
3	"동·하계 종목을 넘나들며 도전해온 인간승리의 주인공들이었다."	경향	03.09	
4	"선수들은 빙판과 설원에서 불굴의 의지와 투혼을 발휘했다."	경향	03.09	스포츠 25면
5	"휠체어컬링팀의 선전은 벅찬 감동을 안겨줬다."	경향	03.09	
6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인간승리의 주인공들에게 각별한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한겨레	03.09	
7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값진 동메달을 따낸 뒤 눈물의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국민	03.09	
8	"한국 선수단은 ... 투혼의 질주를 펼쳐 온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국민	03.09	
9	2018년 평창, 지금 그곳에서는 장애를 극복한 '영웅'들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경향	03.14	오피니언 28면
10	우울감에 빠져 삶의 의미를 못 찼던 20대 중반 어느 날, 신문 한 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반신이 거의 없는 장애인이 보드에 몸을 싣고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환호하는 장면이었다.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됐다...	경향	03.14	오피니언 28면
11	"땀과 눈물로 대회를 준비한 각국 선수들은 불굴의 투지로 유감없이 기량을 펼쳤다."	국민	03.19	
12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드라마를 보고 때론 감동하고 때론 숙연해졌다."	조선	03.19	사회 12면
13	이들 앞에서 고난과 좌절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선수들은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감동을 전했다.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경기 후 눈물을 쏟으며 애국가를 불렀고... 모두 역경에 굴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드라마다. 이들의 치열했던 도전을 지켜보던 우리의 마음도 한 뼘 성장했다.	조선	03.19	1면
14	"파르카소바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 줬다."	서울	03.19	
15	"좌절을 딛고 일어선 장애인 선수들이 불굴의 도전 정신과 투혼을 보여준 것은 감동적인 '인간승리' 드라마였다."	문화	03.19	스포츠 24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6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다. 장애인 노르딕스키 이도연(46)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슈퍼맘' '철의 여인' '위대한 엄마' '슈퍼우먼' 등 그의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도 여럿이다. ...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그의 삶에 결코 포기는 없다. 아니 어쩌면 그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이미 잊힌 지 오래인지 모른다. 그래서 '위대한 엄마'의 아름다운 질주는 현재진행형이자 미래형이다.	한겨레	04.07	인물 10~11면
17	지난달 18일 막을 내린 2018 평창겨울패럴림픽은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저마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 선수들은 실의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 장애를 떨치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선 다섯 남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큰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한겨레	04.07	인물 10~11면
18	차마고도의 순례자들보다 더 극한적인 상황이지만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장애가 없는 이들처럼 보였다.	서울	04.21	오피니언 23면
19	한편에서는 장애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칭송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아	05.15	교육/입시 /NIE 1면
20	처음엔 의사전달조차 어렵던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들까지 벅찬 감동을 얻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원장은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일반인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민	05.29	인물 21면
21	땡볕에서 휠체어를 밀며 경사로를 오르던 한 봉사자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장애인과 가족들의 미소를 보면 피로가 싹 가신다"며 턱밑까지 흐른 땀을 닦았다.	국민	06.11	종교 27면
22	"움직임이 조금 불편할 뿐 여기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1대1로 예비해 놓으신 인격입니다. 오히려 비장애인인 저보다 더 순수한 축복의 통로라는 걸 매일 느끼죠 ... "	국민	06.21	종교 27면
23	시각장애를 딛고 세계유일 전문연주단으로 성장한 단원들의 연주는 무더운 여름 저녁 서울역을 희망, 도전, 감동으로 물들였다.	동아	07.23	기업 C2면
24	평창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에서 한국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설원의 호날두' 신의현(37)과 슬레지하키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빙판의 메시' 정승환(32).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 승리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이들이 얼굴 위에 피워 낸 활달한 웃음은 국민에게 시원한 청량제였다.	조선	07.30	스포츠 26면
25	시각장애인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문득 숙연해집니다. 저들의 길은 어떤 빛으로 밝혀지는 것일까? 그 순간 그와의 '마주침' 자체가 이미 '빛'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조선	11.26	오피니언 34면

● 장애 극복과 재활을 강조하는 표현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장애의 벽 넘어 희망의 전도사로... 이처럼 현장에서 장애의 벽을 뛰어넘고... 재활에 미친 듯이 매달린 끝에... 그는 그제야 활짝 웃을 수 있게 됐다.	세계	03.07	스포츠 23면
2	"장애 극복,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는 스포츠 축제다."	중앙	03.08	
3	"참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온 인간승리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03.09	
4	황연대 성취상은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의사로 성공한...	국민	03.17	사회 12면
5	"장애는 불편일 뿐... 주님 의지해 극복했다"	국민	03.21	라이프 26면
6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고로 장애를 얻었지만 재활을 거쳐 조국 해양수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군무원 3인방 ... 그는 사고 후 정신적 외상으로 1년 반 동안 요리에 손을 대지 못했으나 선배 권유로 칼을 덜 잡는 양식부터 다시 요리를 시작 ... 그는 "비록 엄지손가락은 없지만 요리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 ... 성 주무관은 당시 사고로 친형과 친구를 잃었지만 재활치료 후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 장비 특성상 무거운 부속도 옮겨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일을 목발을 짚고도 일반인보다 더 잘 수행한다. ... 다발성 척추장애로 한쪽 다리를 못 쓰지만 해난구조대 소속 6팀장으로 복무 중 ... 1990년 특공무술 시범훈련 중 부상을 입고 제대했다. 하지만 1994년 잠수 군무원 시험에 합격해 해군에 다시 복귀했다.	문화	04.20	문화 26면
7	"시각장애, 59세, 여성 … 모두 극복하고 지리산 100㎞ 완주 할게요"	문화	05.03	사회 20면
8	경북여고와 대구예담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졸업 논문을 준비했고 지난해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한 과정이 귀감이 돼 학위를 받을 때 총장 공로상도 함께 받았다.	국민	05.14	
9	재활승마는 장애인의 승마활동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	한국	05.25	대구/경북 14B면
10	TV홈쇼핑 첫 론칭 ... 장애를 딛고 일어선 수제화 '아지오'	동아	05.29	유통/소비자 C01면
11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고도 장애를 극복하고 음향 및 녹음기사에 취업한 OOO씨나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비장애인이었다면 알지 못했을 시각장애인의 니즈를 정확히 캐치한 센스리더를 만든 OOO 대표 등의 사례가 있듯이 ...	문화	07.06	오피니언 37면
12	지난 3월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전용 재활 통신망 '넓은마을'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점자 스티커를 원하는지 설문조사했다.	한겨레	07.12	오피니언 28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3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삶과 연주로 생명존중, 배려,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	07.23	기업 C2면
14	"장애도 이겨낸 투지 … 세계무대 향해 '강스매	세계	08.01	스포츠 23면
15	김 화백은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극복한 작가로 유명하다.	동아	09.07	문화 22면
16	장애 이긴 기부천사 … "나누면 더 따뜻하고 행복하다"	세계	10.13	인물 17면
17	천적인 손가락 장애를 극복하고 꾸준히 용접 분야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는 직업전문학교 교사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	한국	10.30	인물 27면
18	중증장애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과 이들을 돕는 활동가들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담아 만든 내년도 달력이 나왔다.	한국	11.20	인물 27면
19	신체장애를 딛고 왼발로 그림 그리기를 꾸준히 해온 김경아 화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중앙	11.22	문화 22면
20	두 곳 모두 대표가 지체장애를 극복하고 창업을 한 곳이다,	동아	11.28	기획 B8면

● 장애인의 가족을 죄인시하거나 영웅화하는 표현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실의에 빠져 지냈던 기간 나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아내에 보답하고 싶다” 는 이유다.	조선	03.10	스포츠 24면
2	금메달보다 빛난 선수들, 그보다 더 빛나는 가족들 응원 - ‘불굴의 스노보더’ 박항승	세계	03.17	2면
3	“아들 다리 잃었을 때도 안 울었는데...” 억척엄마의 눈물	경향	03.18	2면
4	“어머니는 두 번이나 생명 주셨고, 아내는 비뚤어진 남편 묵묵히 지켜줘”	문화	04.04	인물 35면
5	로빈이 그저 숨만 쉬며 생존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내) 다이애나의 사랑과 희생이 만든 기적이었다. 죽고 싶다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 그의 손발이 됐다.	세계	04.06	영화 19면
6	장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 집안이 충격 속에 빠져들었다. 특히 어머니는 넋이 나갔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과 상대해야 하는 어머니는 그 뒤로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졌다. “딸이 저렇게 됐는데 뭐가 좋다고 남의 집 가서 웃고 있느냐며 남의 집 잔치엔 일절 가지 않으셨어요.”	한겨레	04.07	인물 10~11면

●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표현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성인 발달장애인의 18%인 4239명만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상당수 부모는 평생 아이처럼 부양해야 한다.	동아	04.12	수도권 20면
2	영화 '말아톤'이나 '맨발의 기봉이'의 주인공이 바로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이 성인이 돼 의무교육이 끝나면 지능은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더라도 갈 곳은 사라진다.	서울	04.20	사회 10면
3	서군의 단짝은 이의찬(21)씨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술에 입문한 이씨는 지적장애 3급이다. 지능이 8세 수준이다.	중앙	04.23	인물 24면
4	마음의 눈으로 마음껏 뛸래요	서울	05.07	종합 2면
5	발달장애인은 평생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학령기까지는 특수학교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온전히 가족이 돌봐야 한다.	국민	05.16	기획 13면
6	여성 A씨(26세)를 60~80대 마을 남성 7명이 수년간 성추행,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적 장애인 A씨의 정신 연령은 3.5세 정도다.	조선	08.24	사회 12면
7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아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떼쓰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다.	한겨레	09.13	1면

● 사람이 아니라 장애와 보장구에 초점을 맞춘 표현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휠체어 여성들이 택시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도와준다는 이들에게 추행당한 경험이 ...	세계	04.09	오피니언 27면
2	지체장애 1급인 그에겐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대학생, 최초의 휠체어 방송인, 최초의 휠체어 대통령 문화특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세계	04.14	인물 15면
3	휠체어 사용자가 탈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 휠체어 장애인용 고속·시외버스	세계	04.16	기획 8면
4	휠체어 장애인 '저가항공 비행기는 안 태워준다네요"	한겨레	04.24	사회 12면
5	지난 2014년에는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 '대구라온휠합창단'을 창단하고 단장직을 맡았다.	국민	05.29	인물 21면
6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휠체어 전용좌석은 대부분 객석의 맨 첫 줄보다 한 칸 앞에 외따로 떨러져 있다.	국민	06.01	오피니언 23면
7	휠체어 생활자들의 나들이	국민	06.08	오피니언 23면
8	계단 한편엔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간이 경사로가 마련됐다.	국민	06.11	종교 27면
9	휠체어 승객들 '승하차 시위'와 '씁쓸한 고성'	서울	07.04	사회 11면
10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날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확보 등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향	08.15	오피니언 27면
11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수를 늘리고,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전체 중증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전담 수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	08.22	전국 12면
12	2022년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08.22	사회 12면
13	소프라노 조수미 시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용 가능한 '휠체어 그네' 한 대를 서울시에 기증했다.	한국	09.01	인물 25면
14	2022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전담해 수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겨레	09.07	자치의정 3면
15	어릴 적 사고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된 선우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위원으로 일한다. 이 드라마를 지켜봐온 휠체어 장애인 김정현 씨(32)는 ... 2016년 tvNdptj 방영한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조인성은 휠체어 장애인이자 소설가인 서연하 역으로 등장했다. ... 2016년 KBS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의 친구로 등장한 휠체어 장애인이자 의사인 표지수 역시 '감초' 역할에 불과했다. ... 2012년 12월 테드(TED) 강의에 연사로 선 그는 휠체어 스킨스쿠버다이빙에도 도전했다.	경향	09.11	문화 22면
16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볕이 잘 들고, 휠체어 생활이 가능하며, 제대로 된 응급실을 갖춘 병원과 가까운 아파트 1층으로 이사해야 할까.	국민	11.30	오피니언 27면

● 의학적 용어로 장애를 표현하는 경우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1	뇌전증(간질) 장애를 앓고 있는 김순예(43)씨도...	세계	03.07	스포츠 23면
2	2001년 9월 뇌병변을 앓는 원생을 받은 뒤 류 원장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리라고 다짐했다.	국민	04.18	종교 27면
3	뉴질랜드 북섬 남서부에 있는 소도시 마턴의 한 슈퍼마켓에서 자폐증을 앓는 시민들이 장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들 헌터를 키우는 직원 라라 호그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시장을 볼 수 있다.	국민	04.20	국제 8면
4	로즈마리 씨와 멜리 씨는 모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동아	04.20	국제 21면
5	정신장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안전이 위험 수위에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장애 환자가 폭력을 휘두르면 결국 가족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동아	04.30	사회 12면
6	황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식당 주인 김모씨는 이를 악용했다.	국민	05.19	종합 2면
7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이문희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이 20일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일예배에서 장애인으로서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애기하고 있다.	국민	05.21	종교 28면
8	시민이 아이디어 낸 뇌성마비 환자용 신발 서울시에서 제작 지원	조선	05.29	사회 14면
9	그는 영화 속에서 소소한 제스처와 말투, 표정으로 자폐를 앓는 소녀의 성장담을 몸에 스민 듯 펼쳐내 ...	서울	05.29	문화 25면
10	충북 충주의 한 식품회사에 다니는 OOO씨에겐 중증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있다. ... OOO씨는 딸이 뇌병변을 앓고 있다,	조선	06.22	사회 10면
11	장애인 도우미 "환자 놔두고 어찌 쉬나"	중앙	07.03	사회 10면
12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앓아 의사표현 능력이 낮다.	경향	07.30	기획 8면
13	"미국 통계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난독증 학생의 연봉과 취업률은 건강한 학생과 차이가 없다."	한겨레	08.07	교육/입시 /NIE 23면
14	2급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김아무개(33) 씨의 아버지는 "부부가 죽은 뒤 세상에 홀로 남겨질 외아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한겨레	08.10	사회 10면
15	김모(49. 여) 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길 때마다 다른 학부모에게 전화해 이렇게 묻는다.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교남학교로 보내고 싶었으나 그때도 정원이 꽉 차 있었다.	세계	08.14	사회 11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16	이들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이 남성이라는 것이다. ... 수컷 생쥐는 자폐증 환자와 유사한 행동 변화를 보였다.	중앙	09.13	경제 B4면
17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앓는 윤성탄군	국민	09.21	종교 35면
18	건축가이자 스스로 소아마비 환자였던 로널드 메이스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서울	10.31	사회 17면
19	재활힐링승마는 말과 교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의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11.28	인물 8면

● 장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공사장 파이프에 깔려 오른 다리를 절단한"	경향	03.09	
2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여파로 양쪽 발가락 각각 6개, 신장 하나, 반족 심장으로 태어난"	세계	03.09	
3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심장이 하나이고 발가락이 6개인 기형아로 태어난"	한겨레	03.09	
4	"양쪽 정강이뼈와 손·발가락, 콩팥까지 기형이었던 마스터즈는 친부모에게서 버림받고 두 다리까지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경향	03.09	
5	신의현은 스물여섯 살이던 2006년 양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 복부와 상체수술이 먼저였고, 그 과정에서 하체 수복이 늦었다. 담당의사는 두 다리를 끊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조선	03.10	스포츠 29면
6	...생모가 방사능에 노출돼 자궁이 오염된 상태에서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 양쪽 다리 정강이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발가락은 6개씩인데다 두 개여야 할 콩팥도 하나뿐이다... 제 기능을 못하던 두 다리를 잘라내는 아픔 속에서도...	세계	03.15	스포츠 23면
7	황민규는 더 먼 곳을 본다...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희귀병 때문에 오른쪽 눈은 거의 시력을 상실했다. 왼쪽 눈의 시야도 제한적이라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향	03.16	스포츠 24면
8	"악성 종양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시련을 겪고 대회를 준비해 오던 중 암이 재발"	서울	03.19	
9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와 왼팔을 못 쓴다. 4지(四肢) 가운데 1지(肢)만 멀쩡하다. 오른손 기능도 40%밖에 남지 않았다.	세계	04.14	인물 16면
10	김아무개(30·여)씨는 초등학생 시절 뇌척수막염에 걸려 1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어렵게 회복됐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사물 변별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판단이 어려우며, 충동 조절을 못하고, 사회 적응도 못하는 1급 지적장애인이 됐다. 또 기도삽관 산소공급 치료 과정에서 치아가 모두 녹아내려 잇몸으로 음식을 겨우 씹어서 삼킨다 ... 김씨는 절도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충동을 조절하지는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한겨레	04.19	영남 12C면
11	수년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분리수거 일을 강요당해 '잠실 현대판 노예'로 알려진 피해자 ...	국민	07.11	사회 10면
12	"우리는 일 부부" 단속 피하려 염전노예와 거짓 혼인 ... 신안 염전노예 양정민 씨 사건 재구성	국민	07.16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3	승현이는 태어난 날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출산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장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성 장염'이 발생했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2개월 넘도록 소장과 대장을 몸 밖에 꺼낸 채 인공항문(장루)을 달고 살아야 했다. 생후 100일 만에 대소장 절제수술을 받고서야 병원을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	07.19	종교 23면
14	'섬 노예' 장애인 구출했지만 … 같은 곳서 또 강제 노동 / '현대판 노예' 27건 분석해보니 재발방지책 없어 / 10년 간 착취를 당한 끝에 구출됐던 피해자가 "달리 갈 곳이 없다"며 다시 노예생활로 돌아간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	09.11	사회 10면
15	'21세기 노예'로 불리며 충격을 줬던 전남 신안, 완도 '염전노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겨레	11.24	종합 11면
16	임신 27주에 태어난 신군은 2주 만에 소장(작은 창자)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 생겨 두차례 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미숙아에게 흔한 '괴사성 장염'(장이 썩어들어감)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신군의 소장은 25㎝밖에 남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로 단장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국민	11.27	건강 17면

●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들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조윤호 감사는 "선수들 대부분은 정상이었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됐다"며 …	중앙	04.03	사람사람 26면
2	정신지체는 정상 아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발달하되 단지 발달 속도가 느리지만 범발달장애는 발달 속도는 물론 방향성도 정상 아이들과 다르다.	서울	04.16	건강 25면
3	정신질환자들의 반사회성과 공격성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정신질환 피의자 증가의 원인	서울	04.25	사회 8면
4	중형 크기의 차체에 소형 엔진을 얹어 겉은 멀쩡하지만,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절름발이들이었다.	한국	06.20	자동차 19면
5	김기팔 작가, 그가 느끼는 오늘은 암흑의 세월이다.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장님이 되어야 산다.	한겨레	08.04	문화 22면
6	"부모님들은 자식의 허물 앞에 벙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때문에 '신과 함께'는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셈이죠."	서울	08.09	
7	만약 누군가 내게 짖은 까닭을 묻는다면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쑥스럽게 웃을 수밖에 없다.	한겨레	09.14	문화/출판 B7면
8	박영선 의원 등 6~7명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청와대에 벙어리였던 당의 관행을 깼다.	중앙	09.15	오피니언 30면
9	나는 왜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앉은뱅이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서울	09.18	인물 35면
10	박용진 대박, 유치원도 김일성도 겁 안낸 '똘끼'가 비결 〈중앙일보 10. 25. 오피니언 28면〉	중앙	10.25	오피니언 28면

●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관용구)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1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념의 자폐증이 점점 심해져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전선'을 보는 느낌이다.	경향	04.07	기획 11면
2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사시(斜視)가 여전하다.	세계	04.14	인물 15면
3	마음의 눈으로 마음껏 뛸래요	서울	05.07	종합 2면
4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맑고 티 없이 웃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계	05.17	전국 12A면
5	업무 추진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	06.04	종합 9면
6	아빠도 옆에 놓인 간이의자에 누워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 아빠가 벙어리가 된 것도, 자연스럽게 아빠가 육아에 소극적이게 되는 것도 모두 '시간' 때문이다. ... 우리 그러다 나중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수가 있다.	중앙	06.06	오피니언 24면
7	아빠도 옆에 놓인 간이의자에 누워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 아빠가 벙어리가 된 것도, 자연스럽게 아빠가 육아에 소극적이게 되는 것도 모두 '시간' 때문이다. ... 우리 그러다 나중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수가 있다.	중앙	06.06	오피니언 24면
8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칭 중국 전문가들조차 중국의 성공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이다.	세계	06.09	문화/출판 14면
9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칭 중국 전문가들조차 중국의 성공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이다.	세계	06.09	문화/출판 14면
10	국가와 지방의 재정은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세계	06.11	사설/칼럼 27면
11	예전 앉은뱅이 밥상에 가장이었건 아버지가 TV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으시고 ...	경향	06.11	오피니언 28면
12	기숙사는 공짜였다. 앉은뱅이 탁자 하나에 텔레비전을 놓아둔 동료 방에 놀러 가기도 했다.	경향	06.13	오피니언 28면
13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보고 말하는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다.	중앙	06.14	오 피 니 언 B9면
14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보고 말하는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다.	중앙	06.14	오피니언 B9면
15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며 "인권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절름발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선	06.15	북한/ 한반도 정세 12면
16	그러다 보니 눈먼 정부 자금으로 창업 한 번 못해 보고 대학을 졸업하면 바보 소리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06.16	오피니언 27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17	지진으로 3명이 사망했고, 약 300명이 다쳤으며, 곳곳에서 건물 파손과 화재, 교통마비가 빚어졌다.	서울	06.19	국제 17면
18	세종을 '정치적 미숙아'로 간주하고 후견인 역할을 자체한 것이다.	문화	06.20	문화 26면
19	당연한 얘기지만 일주일여 러시아의 서부를 조금 돌아보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그릇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	06.20	축구 27면
20	지방의원의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201조 원 예산은 지자체장의 '눈먼 돈'이 될지도 모른다.	세계	06.25	기획 3면
21	대법원은 6일 째 '꿀 먹은 벙어리'다.	세계	06.25	오피니언 27면
22	하지만 한반도 풍향계가 바뀐 뒤에는 꿀 먹은 벙어리다,	세계	06.27	축구 2면
23	60조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펑펑 쓰는 눈먼 세금이 아니라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릴 종잣돈으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06.28	호남/제주 12A면
24	순기능이 있다 해도 눈먼 돈으로 놔둬선 안 된다.	한국	06.28	사설/칼럼 31면
25	국회 특수활동비는 사용명세를 보고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	06.29	종합 10면
26	북 주민 인권 상황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외면하는 문 정부에 국제단체들 비판 수위 높여.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북한 앞에 서면 꿀 먹은 벙어리다.	조선	07.09	오피니언 34면
27	북 주민 인권 상황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외면하는 문 정부에 국제단체들 비판 수위 높여.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북한 앞에 서면 꿀 먹은 벙어리다.	조선	07.09	오피니언 34면
28	'계엄 문건' 특별수사 지시한 청, 넉달 전 이미 보고받았다는 의혹엔 '꿀 먹은 벙어리'	조선	07.12	1면
29	항공사 직원이 ... 김해공항 BMW 광란의 질주극. "BMW 질주 속도가 '미쳤다'고 생각들 정도로 빠르다."	조선	07.13	사회 12면
30	하지만 주민들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다,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쳐다보기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	한국	07.18	대구/경북 B12면
31	하지만 주민들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다,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쳐다보기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	한국	07.18	대구/경북 12B면
32	외국인만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시는가. 걱정하지 말라. 다양한 번력 앱이 있다.	중앙	07.20	여행 19면
33	외국인만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시는가. 걱정하지 말라. 다양한 번력 앱이 있다.	중앙	07.20	여행 19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34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쌍용차 거짓과 광란의 10년, 위로와 연대의 날 행사'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 그 속에 '복직' 메시지를 찾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한겨레	07.23	사회 12면
35	중국의 이어지는 사드 보복에도 한중 FTA는 꿀 먹은 벙어리다.	중앙	07.23	오피니언 26면
36	다음달 예정된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역시 절름발이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중앙	07.23	사설/칼럼 30면
37	중국의 이어지는 사드 보복에도 한중 FTA는 꿀 먹은 벙어리다.	중앙	07.23	오피니언 26면
38	항공사 직원이 ... 김해공항 BMW 광란의 질주극. "BMW 질주 속도가 '미쳤다'고 생각들 정도로 빠르다."	조선	07.46	사회 12면
39	기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고용 개혁만 있고 노동 개혁은 실종된 절름발이 개혁안이다.	동아	08.03	사설/칼럼 27면
40	정작 사건이 발생하면 시청률과 조회수에 눈 먼 언론들은 '선을 넘은' 보도를 남발한다.	한겨레	08.04	사회 16면
41	기독권의 표에 눈 먼 정치인들은 이들의 강력한 후원자다.	동아	08.08	오피니언 31면
42	미국 시애틀에서 조종사 면허가 없는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를 훔쳐 광란의 비행을 벌이다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	08.13	국제 12면
43	미국 시애틀에서 조종사 면허가 없는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를 훔쳐 광란의 비행을 벌이다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	08.13	국제 1면
44	열심히 배워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능력을 갈고닦는 수밖에 없다. 모르면 눈 뜬 장님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08.13	사설/칼럼 27면
45	여야는 국회가 특활비를 눈먼 돈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8일 "특활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영수증 처리를 통해서 사용 내역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선	08.13	정치 6면
46	역대 정부가 규제개력의 허들을 뛰어넘지 못한 이유는 표에 눈 먼 정치인들, 일부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저항 등 복합적일 것이다.	동아	08.13	사설/칼럼 31면
47	정부는 이번 사건을 돈에 눈먼 개인사업자의 일탈로 몰아갔다.	중앙	08.13	사설/칼럼 30면
48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서울	08.14	사설/칼럼 31면
49	공원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었던 아케이드가 철거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탑골공원은 아직도 절름발이 신세다.	중앙	08.15	기획 17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50	대체 무슨 심리인가. 안전보다 헤세인가? 안전을 빌미로 눈먼 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것일까.	서울	08.16	오피니언 29면
51	브루클린 다리의 교통마비 상황은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11월 이후 4개월 가량 더욱 심해진다. ... 하지만 판사는 브루클린에서 계속 재판을 하되, '교통마비'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조선	08.17	국제 19면
52	"마누라 생활비", "자녀 유학비" 용도 밝힐 필요도 없는 눈먼 돈	한국	08.18	정치 11면
53	유학원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한겨레	08.21	사회 10면
54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 50조원을 허공에 날리고도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안다.	조선	08.23	사설/칼럼 27면
55	어느 날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됐을 때 느껴지는 당혹스러움이라니.	경향	08.29	오피니언 28면
56	서울 오후 7~8시 45㎜ 기습 폭우 도심 곳곳 도로 잠겨 교통마비	세계	08.29	사회 12면
57	어릴 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를 읽은 기억이 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장님 6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하고는 각자 무엇인지 맞혀 보도록 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기리가 무같이 생겼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곡식을 빻는 절구같이 생겼다고 했다.	서울	09.03	오피니언 29면
58	어릴 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를 읽은 기억이 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장님 6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하고는 각자 무엇인지 맞혀 보도록 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기리가 무같이 생겼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곡식을 빻는 절구같이 생겼다고 했다.	서울	09.03	오피니언 29면
59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간투자자금은 지금도 여전히 눈먼 돈이다.	경향	09.07	오피니언 30면
60	우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농부가 내놓은 눈먼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깊은 산골 쪽으로 다녀보았다.	동아	09.11	오피니언 28면
61	50대, 소주 2병 먹고 심야 난동 / 경찰차까지 들이받아 교통마비 / 특공대 투입, 5시간 만에 검거	조선	09.12	사회 10면
62	광화문 3개 차로 꽉 메워 교통마비, 경찰 "불법 아니다" 집회 허가	조선	09.13	사회 12면
63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해도 결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조선	09.15	사설/칼럼 31면
64	국회는 성차별 안전지대? / '유난한 여자' 눈총에 벙어리 냉가슴 / 여야 4당 女의원 '젠더 이슈' 목소리	세계	09.15	정치 6면
65	국회는 성차별 안전지대? / '유난한 여자' 눈총에 벙어리 냉가슴 / 여야 4당 女의원 '젠더 이슈' 목소리	세계	09.15	정치 6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66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과거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일갈하며 밀어붙일 때만해도 보수진영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	한국	09.17	북한/한반도 정세 4면
67	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연구조교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교수 개인 업무를 맡게 돼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09.17	기획 7면
68	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연구조교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교수 개인 업무를 맡게 돼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09.17	기획 7면
69	“처음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것도 있고,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도 있어요. 국민에게는 생소한 눈먼 돈이죠.”	조선	09.18	기획 E8면
70	“이렇게 하다가 끝내 급제나 할 수 있겠더냐? 그만 물러가거라.” 다산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한국	09.20	기획 28면
71	“이렇게 하다가 끝내 급제나 할 수 있겠더냐? 그만 물러가거라.” 다산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한국	09.20	기획 28면
72	시간의 무게에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목욕탕의 외관에서, 대야와 앉은뱅이 의자 등 더 이상 새것으로 바뀌지 않을 목욕탕 기물에 묻은 손때까지 모두 사진에 살뜰하게 담겼다.	경향	09.21	오피니언 30면
73	따라서 이 구역에서 무인정찰기 비행을 금지하면 우리 군은 눈뜬 장님이 된다.	중앙	09.21	오피니언 26면
74	어쩌면 한국을 가장 냉정하고 정확하게 관찰하는 이가 박노자인지도 모른다. 우린 몰라서도 못 쓰고, 알아도 못 쓰고, 눈뜬 장님들인지도 모른다.	조선	09.22	문화/출판 15면
75	“이런 데도 굳이 눈먼 돈(특활비)을 쓰면 오해와 논란만 증폭될 것”이라 바핀한다. ... 먼저 본인들이 눈먼 돈 처리 관행을 확실히 일소해야 정부의 깜깜이 예산 꼼수를 혁파할 힘이 생긴다.	중앙	09.27	오피니언 28면
76	반면 우리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장님과 다를 바 없었다. 중국은 그대로 서 있는데 한중 관계가 널뛴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한국	09.28	오피니언 30면
77	스웨덴을 향해서는 핏대를 세웠던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판빙빙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다.	조선	09.28	오피니언 34면
78	스웨덴을 향해서는 핏대를 세웠던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판빙빙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다.	조선	09.28	오피니언 34면
79	반면 우리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장님과 다를 바 없었다. 중국은 그대로 서 있는데 한중 관계가 널뛴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한국	09.28	오피니언 30면
80	그렇지 못하면 눈먼 사랑의 열정이 결국 전제권력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 것이라는 경고다.	한국	09.28	문화/출판 23면
81	출세욕에 눈먼 일부 공안검사들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했다.	한겨레	09.29	사회 14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82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나도 모르는 나에 눈먼 장님입니다.	한겨레	10.03	문화 17면
83	눈먼 친박계가 한국당 쇄신은 물론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0.03	오피니언 27면
84	이 광란의 폐허에서 중국 사제들은 신자들이 조선 교회의 모범을 따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를 바라 …	한국	10.04	기획 28면
85	당국은 왜 예금금리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일까.	한국	10.05	경제 18면
86	미국이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미사일 구입을 결정한 인도를 지켜보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국	10.05	국제 16면
87	세습왕조체제로는 시장경제를 할 수 없다는 완고한 선입관이 그들을 색맹으로 만든다.	중앙	10.06	정치 29면
88	돈벌이에 눈먼 인간의 탐욕이 야생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현장이다.	세계	10.06	오피니언 18면
89	이솝우화에는 협력을 통해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데 성공한 장님과 앉은뱅이 이야기가 나온다.	세계	10.09	스포츠 22면
9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가지도 않은 출장을 다녀왔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10.10	경제 19면
91	앉은뱅이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내 주변을 청소 제외 영역으로 정해 로봇청소기를 작동해보니 꽤 편리한 기능이었다.	조선	10.11	IT과학 B11면
92	이 100조원 중 상당액은 눈먼 돈이 될 것이다.	조선	10.12	사설/칼럼 35면
93	국내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이유는 뭘까.	중앙	10.15	기획 8면
94	연간 2조원의 혈세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를 눈먼 돈처럼 제멋대로 썼다니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서울	10.15	사설/칼럼 31면
95	전교조 또한 꿀 먹은 벙어리다.	서울	10.17	오피니언 35면
96	애초 이 문제를 들춰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꿀 먹은 벙어리였다.	국민	10.17	종합 2면
97	무상보육 논란 때마다 혈세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 닫을 것처럼 엄살 피우던 이들이 눈먼 돈을 쓰면서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	10.17	사설/칼럼 35면
98	푸이그는 침묵에 빠진 밀러파크 다이아몬드를 돌며 광란의 세리머니로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	10.22	스포츠 25면
99	팬들에게 특별한 곳을 여행하는 느낌을 선사하고 싶어 공연은 라이브로 소화하고 광란의 나이트클럽 분위기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돈나!	동아	10.22	문화 26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100	하지만 맡겨 놓은 자녀가 볼모처럼 여겨져 벙어리 냉가슴 앓기만 했던 시민들이 지원군이 돼줬다.	한국	10.22	사회 3면
101	의원들이 지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한 것은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다.	경향	10.23	오피니언 30면
102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사용처는 전혀 알 수 없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던 셈이다.	문화	10.23	종합 2면
103	김일성 얘기만 나오면 비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는 확 달랐다.	중앙	10.25	오피니언 28면
104	언론까지 통제돼 주술에 걸린 패전 직전 광란의 일본, 그 땅에 사는 힘겨운 민중의 삶을 드라마는 그리고 있다.	서울	10.26	오피니언 29면
105	핵을 가진 국가의 핵은 비켜 두고 핵 없는 국가의 재래식 무력만 줄이는 것은 완전히 절름발이 군축이다.	문화	10.26	인물 32면
106	눈먼 돈 쓰고 보자 … 횡령사건 기승	국민	10.26	사회 4면
107	노인요양시설의 '요양 급여'도 오랫동안 눈먼 돈으로 여겨지며 먹잇감이 됐다.	서울	10.26	사회 2면
108	식당 찬모와 이용사까지 마구잡이 정규직화하고서 또 비정규직을 뽑는다니 대체 뭔가. 시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있다.	조선	10.27	사설/칼럼 31면
109	우리 세대는 모두 선생님이 열어주신 문으로부터 새어나온 빛에 눈먼 자들과 다름 없다.	동아	10.27	인물 25면
110	할로윈에는 영화 '할로윈'이 찾아온다. 광란의 살육으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슬래셔 무비의 전설인 '할로윈'(1079)을 잇는 동명 속편이다. 〈한국일보 10. 31. 연예/오락 16면〉	한국	10.31	연예/오락 16면
111	미국이 통제권을 타국에 맡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래연합사는 절름발이 사령부로 전락할 수 있다.	세계	11.02	국방/외교 4면
112	국회는 당장이라도 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야단이었는데, 이 의원 사고가 터지자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서울	11.07	사설/칼럼 35면
113	더 이상 진위공방이나 두둔으로 우리 스스로를 말을 못하는 꿀 먹은 벙어리로 희화화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	11.10	북한/ 한반도 정세 29면
114	11일 자정 쇼핑 게시를 알린 지 124초 만에 100억 위안 진입, 첫 107분간 거래에 1000억 위안을 돌파하며 광란의 클릭이 이뤄졌다.	서울	11.12	국제 10면
115	큰 목소리의 광란이 줄어들고, 실어증에 가깝게 말 못하던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리믹스의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세계	11.13	오피니언 25면
116	신분상승에 눈먼 욕망의 그 끝은 …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한겨레	11.15	문화 18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보도	지면
117	신문들은 메르스 특집 면을 만들어 정부의 늑장 대처와 자본에 눈먼 병원을 질타했다.	한국	11.17	오피니언 27면
118	“이 시기에 대한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대는 물론 현대 미술에 대한 연구도 절름발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	11.19	문화 17면
119	광란의 제의처럼 격렬하고 빽빽한 안무는 보기 즐거웠지만 춤추기엔 상당히 힘들어 보였다.	세계	11.19	문화 20면
120	가짜 상품과 가짜 공시로 투자자들의 돈을 눈먼 돈처럼 쓴 것은 물론이고 ...	한겨레	11.20	경제 18면
121	방구석 앉은뱅이 책상이 남루하다. 못 배운 한을 풀고자 했을까.	서울	11.22	기획 20면
122	철도노조, 교통공사 등이 파업에 불참해 교통마비 같은 시민 불편은 크지 않았다.	한국	11.22	종합 8면
123	김해공항서 광란의 질주 / 항공사 직원에 금고 2년	조선	11.24	사회 10면
124	얼마나 눈먼 돈이고, 회한과 눈물이 들어있는 돈인지를 함축적으로 전했다고 생각한다.	동아	11.27	문화 26면
125	뒤뚱거리며 걷는 절름발이 오리처럼 국정 장악력이 악화된 것을 의미하는 레임덕은 일반적으로 임기 말에 나타난다.	국민	11.28	오피니언 22면
126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국내 기업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세계	11.29	사설/칼럼 27면
127	추구하는 가치와 서 있는 입장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반대편 의견에 귀를 닫는다면 정책은 균형을 잃고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11.30	오피니언 30면
128	미노총 등 50여단체 ‘민중공동행동’ / 집회 마친 뒤 국회포위 행진 예고 / 주말 여의도 일대 교통마비 우려	동아	11.30	경제 4면

● 기타 부적절한 표현들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	지적장애인은 보통사람보다 집중력이 10배나 된다.	동아	04.13	사회 14면
2	장은도(52) 목사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자 플루티스트로서의 삶을 이렇게 소개했다.	국민	04.13	종교 27면
3	10여명의 지적·발달장애인들이 강사의 질문에 대답하며 집중하고 있었다.	국민	04.16	종교 25면
4	발달장애인 이모(23)씨는 특수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다. 이씨는 잘 넘어지고 손가락들이 많이 굳어 있다. 어느 날, 난생 처음 혼자 외출하기로 했다. 몇 시간에 걸쳐 옷을 입고 문밖으로 나왔다.	중앙	04.16	기획 19면
5	전액 시비 운영 ... 투석장애인까지 확대	국민	04.18	기획 13면
6	손떨림이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용지의 칸은 너무 좁다.	한겨레	04.20	사회 12면
7	자폐성 발달장애 3급인 이승민이 한국 프로골프투어 정규 대회에서 처음으로	조선	04.21	스포츠 25면
8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휘경(46)씨도 비행기 탑승에 관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한겨레	04.24	사회 12면
9	장애인 지하철 환승지도 만든 장애아 어머니	동아	05.09	인물 24면
10	장애인들 또한 일반인들 못지않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 원론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 통합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사회에 나가 일반인들과 교류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어울려 잘 살고 있습니다. ...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기에 대학을 오는 게 좋습니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일반인들에게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	05.15	교육/입시/NIE 1면
11	'열 손가락 없는' 장애우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의 고봉 안나푸르나를 등정했다.	조선	05.15	인물 28면
12	두 사람이 세운 한국특수요육원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사거리에 있다. 발달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양하게 치료하고 교육한다.	국민	05.16	종교 30면
13	"2005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 스페셜올림픽에서 발달장애우들의 경기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 "	세계	05.17	전국 12A면
14	장애인-일반인 함께하는 사랑 나눔 축제 열어요." ... "장애인과 일반이 함께 행복할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 정신, 지체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 대구지역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	국민	05.29	인물 21면
15	장애인-일반인 함께하는 사랑 나눔 축제 열어요." ... "장애인과 일반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 정신, 지체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 대구지역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	국민	05.29	인물 21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6	일반인과 장애인이 아무 장벽 없이 섞여 뛰는 이 장면이야말로 영국이 왜 장애인 선진국인지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중앙	05.30	오피니언 31면
17	일반인과 장애인이 아무 장벽 없이 섞여 뛰는 이 장면이야말로 영국이 왜 장애인 선진국인지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중앙	05.30	오피니언 31면
18	알코올사용장애, 니코틴사용장애를 제외한 전반적인 정신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06.05	건강 24면
19	김남연(52) 씨는 최근 주말 아침 자폐성 발달장애 1급인 아들과 서울 삼성동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에 갔다다. ... 김정숙(52) 씨는 2016년 자폐성 발달장애 1급인 아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시켜야 했다. ... 올해로 고1이 되는 자폐성 발달장애 아들을 둔 이진주(47) 씨는 외출이 두렵다. ... 윤경자(52) 씨는 발달장애 1급인 25살 아들을 위해 마련했던 중랑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쫓겨났다.	한국	06.05	기획 11면
20	말 타며 말문 트이기 시작한 지적장애아. ... 지적, 자폐, 뇌병변 중증 장애(1~3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활 승마 교실엔 지난해까지 278명이 참가했다.	문화	06.07	수도권 15면
21	최근 산모의 혈액에 있는 태아의 DNA를 추출하여 염색체 검사를 하는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가 도입되면서 침습검사를 주저하는 임산부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다.	국민	06.11	건강 H02면
22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는 미숙아, 다문화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산모우울 등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보건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발해 왔다.	서울	06.13	오피니언 29면
23	경북닥터헬기는 9분만에 40여km 거리를 날아갔지만 이미 출산한 상태. 산모는 하혈기가 있었고 신생아도 미숙아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했다.	한국	07.04	대구/경북 12B면
24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발달·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국민	07.06	종교 29면
25	이곳의 이름은 헤이즐우드 학교. 2세부터 18세까지의 장애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다. ... “이곳 사람들은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 없나요?” ... “예전에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지만, 지금은 그럴 기회가 많아요.” ... 일반학교에서도 장애아들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줘야...	경향	07.06	기획 6면
26	장애아의 가족·친구 25명, 엄홍길 대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 답사	조선	07.07	기획 B6면
27	장의 일부가 이곳을 비집고 나온 것이 바로 소아 탈장이다. ... 정상아이의 5%, 미숙아의 10% 정도가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	07.09	건강 S3면
28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율이 5.5%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동아	07.09	인문 28면
29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여성은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지고 남성은 가임력이 떨어진다. 지금도 기형아 예방을 위해 산모에게 적절한 엽산 복용을 추천하고 있다.	서울	07.10	오피니언 29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30	정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계획에 중증장애아 가족들이 공공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경향	07.11	전국 14면
31	감염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실도 2개 설치한다.	동아	07.12	사회 12면
32	국내서 가장 작은 '한뼘' 초미숙아 ... 302g의 초극소저체중미숙아(이하 초미숙아)는 이사랑 양이다. ... 초미숙아는 500g 미만, 미숙아는 임신 34주 이전에 태어나거나 체중이 1.5㎏ 미만인 아기를 말한다.	중앙	07.13	종합 2면
33	체중 302g, 신장 21.5cm, 겨우 어른 손만한 크기로 태어난 이른둥이(미숙아) '사랑이'가 5개월여의 집중치료 끝에 3kg의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400g 이하 초미숙아가 생존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은 임신 6개월 만에 302g의 초극소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난 이사랑 아기가 169일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마치고 12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한국	07.13	사회 14면
34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	07.13	사회 12A면
35	수많은 미숙아를 봐온 주치의 정의석 교수는 "사랑이를 처음 마주쳤을 때 내 몸이 굳었다"고 했다.	조선	07.13	사회 12면
36	서울아산병원은 엄마 뱃속에서 자란 지 6개월 만에 초극소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난 사랑이가 169일간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다고 밝혔다. ... 초극소저체중미숙아는 출생 몸무게 1kg 미만일 때 해당된다.	국민	07.13	인물 29면
37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은 초극소저체중미숙아 (이하 초미숙아)로 태어난 사랑이가 169일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견디고 12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경향	07.13	종합 2면
38	몸무게 302g으로 국내 최소 미숙아로 태어난 이사랑 아기가 5개월 동안의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12일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퇴원하고 있다.	한겨레	07.13	인물 19면
39	400g 미만의 초극소저체중미숙아(초미숙아)가 생존할 확률은 1%	서울	07.13	종합 2면
40	출생 당시 사랑이의 몸무게는 302g, 키는 21.5cm에 불과했다. 국내 초미숙아(400g 미만으로 태어나 생존한 미숙아) 생존 사례 중 가장 작았다.	동아	07.13	인물 23면
41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은 초극소저체중미숙아 (이하 초미숙아)로 태어난 사랑이가 169일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견디고 12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운영하는 초미숙아(400g 미만으로 태어나 생존한 미숙아) 등록 사이트에는 현재 201명의 미숙아들이 등록돼 있다. ... 현재 국내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1.5kg 미만 극소 저체중 미숙아는 3000여 명에 달한다.	세계	07.13	
42	체중 1.5kg 미만의 미숙아 생존율이 크게 올라 87%에 달한다.	중앙	07.20	노동/복지 14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43	후시딘은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발육장애, 부신 억제와 같은 부작용의 우려가 거의 없어 신생아(생후 4주)와 미숙아를 제외한 아이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	07.23	종합 L2면
44	서울역서 시각장애우 공연 ... 배려-나눔 문화에 앞장	동아	07.23	기업 C2면
45	임신진단과 풍진항체 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이다.	중앙	07.23	건강 S4면
46	이른둥이(미숙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 가장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솜이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07.23	경제 17면
47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의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동아	07.25	건강 C1면
48	장애인 콜택시는 2005년 '교통약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교통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보유해야 한다.... 교통 장애인들은 "저상 버스보다 장애인 콜택시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조선	08.01	사회 11면
49	최근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모(43)씨는 복통이 심해 병원에 가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 ... 지난 25일 오후 1시 뇌성마비 1급 임종민(43)씨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봤다.	조선	08.01	사회 11면
50	2010년부터 홀트일산복지타운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장애아라 어디에도 입양되지 못한 아이와 어른 230여 명이 모여 사는 곳.	조선	08.13	문화 16면
51	장모(38)씨는 최근 주치의로부터 고령 임신이니 일반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외에 태아 유전자 검사인 '니프트(NIPT)'를 더 고려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 임신부 최모(28)씨는 산전 기형아 검사(쿼드 검사)에서 태아의 다운증후군 확률이 '1대 150'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각종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임신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	08.21	건강 16면
52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점수가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인보다 부족해진다.	국민	09.05	종합 6면
53	현행법상 장애인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고.... 현행법이 지켜지지 않은 장애인 출입로는 무용지물이다. ... 서울시는 9월에 이촌, 잠실, 양화, 강서 등 각 한강공원 내 16개 편의점으로 통하는 장애인 휠체어 출입로의 개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동아	09.05	수도권 18면
54	장애인 학부모 수십명이 무플을 꿇고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지 1년 만에 교육당국과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합의했다.	한겨레	09.05	사회 12면
55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무릎 호소' 1년 만에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구 주민들이 예정대로 특수학교를 짓기로 합의했다.	경향	09.05	사회 12면
56	합의는 장애인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무릎호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졌다.	경향	09.06	사설/칼럼 31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57	두 돌쯤이었나. 한 TV 저녁 뉴스에서 자폐아의 특성에 대한 보도를 봤다. ... 자폐아는 자동차를 뒤집은 뒤 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동아	09.08	사회 6면
58	2018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산업박람회에 참가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JW바이오사이언스'가 미숙아에게 산모의 몸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트랜스포트 보육기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	08.09	경제 14면
59	기형아 진단을 받은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아이 생일 때마다 백만 원씩 기부하는 부모...		08.18	오피니언 27면
60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성장이 더딘 아이, 입이 너무 짧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도 부모가 식사일기를 챙기면 아이의 올바른 영양 섭취를 도울 수 있다.	중앙	08.20	건강 S1면
51	장모(38)씨는 최근 주치의로부터 고령 임신이니 일반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외에 태아 유전자 검사인 '니프트(NIPT)'를 더 고려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 임신부 최모(28)씨는 산전 기형아 검사(쿼드 검사)에서 태아의 다운증후군 확률이 '1대 150'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각종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임신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	08.21	건강 16면
62	"실험 결과 청각장애인은 주행 상황 변화에 따른 속도 편차 등에서 일반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을 하는 데 안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	08.22	종합 16면
63	세포의 성장, 발달에 관여하는 엽산은 특히 태아의 정상 발달과 기형아 예방을 위해 임산부가 꼭 먹어야 할 영양소로 ...	중앙	08.27	건강 S4면
64	교보생명은 2004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미숙아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08.29	특집 B3면
65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	문화	08.29	인물 36면
66	의사무능력자는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중앙	08.30	오피니언 33면
67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점수가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인보다 부족해진다.	국민	09.05	종합 6면
68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무릎 호소' 1년 만에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구 주민들이 예정대로 특수학교를 짓기로 합의했다.	경향	09.05	사회 12면
69	장애아 부모들 무릎 호소 1년 만에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합의했지만 추후 학교땅에 한방병원 추진 약속	동아	09.05	사회 16면
70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장애아 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찬성을 요청한 사건 이후 ...	서울	09.05	기획 2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71	장애인 학부모 수십명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지 1년 만에 교육당국과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합의했다.	한겨레	09.05	사회 12면
72	■ 합의는 장애인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무릎호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졌다.	경향	09.06	사설/칼럼 31면
73	장애아 학부모인 장 팀장은 5일 서울신문과 만나 "그 일(무릎호소) 이후 강서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특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서 … "우리 사회가 선입견과 편견 없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장애아들을 봐 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	09.06	종합 2면
74	두 돌쯤이었나. 한 TV 저녁 뉴스에서 자폐아의 특성에 대한 보도를 봤다. … 자폐아는 자동차를 뒤집은 뒤 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동아	09.08	사회 6면
75	그동안 일부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일반 범죄율은 정상인의 10분의 1 정도로 낮지만 강력범죄율은 일반인의 7~10배라는 주장을 편 적이 있지만, 이는 통계 해석의 오류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	한국	09.11	건강 25면
76	인천에 사는 최태웅(38) 씨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연탄가스를 맡고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	09.11	인물 25면
77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정원 20% 내의 장애아종일반이 있는 곳이다. 정부는 장애아와 비장애아들이 함께 다니는 통합유치원도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향	09.13	종합 7면
78	155cm의 단신인 후지카와는 출생 당시 생명이 위태로웠던 미숙아였다는 사실도 관심을 모았다.	문화	09.13	인물 29면
79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아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떼쓰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다.	한겨레	09.13	1면
80	장애인 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향	09.13	종합 7면
81	'한방병원 부지 협조'를 내건 서울 강서 '특수학교 합의'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아 학무모들이 갈등을 끝내기로 했다.	경향	09.12	종합 17면
82	이 약을 먹은 임신부에게서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기형아가 태어난 것이다. 기형아 수는 46개국 1만 명에 달했다.	중앙	09.17	건강 S2면
83	AI의 발달로 조만간 시각장애인들이 풍경을 '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모르는 일반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날이 당겨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09.18	국제 16면
84	도유치원은 정규학급(비장애) 6개와 누리반 1개를 운영해 왔는데, 유치원 붕괴 뒤 상도초등학교에 '더부살이' 하면서 교실을 6개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수 아동의 개별화 교육을 할 공간부터 없앴다.	한국	09.20	사회 14면
85	김 양은 올 5월 출생 당시 몸무게 1.8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뿐 아니라 중증 구순구개열(입술과 입천장 갈림증) 장애까지 있었다.	동아	09.27	사회 12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86	미숙아나 3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부로 먹이면 안 된다. 미숙아나 신생아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뒤 균혈증, 패혈증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서다. ... 미숙아나 신생아에게 플바이오틱스를 먹여야 한다면 의료진과 상의한 뒤, 효과가 있는 균주를 처방받아 먹여야 한다.	조선	09.28	건강 B7면
87	그 즈음에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자 찬양 사역자가 새로 와서 찬양 인도를 했다.	국민	10.01	종교 30면
88	임산부가 권장량 이상 먹으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진다.	조선	10.02	건강 B11면
89	캥거루 케어는 1983년 의료서비스가 미진한 개발도상국에서 저체중 미숙아를 위해 인큐베이터 대안으로 처음 도입된 방법이다.	문화	10.04	문화 24면
90	일본 풍진 환자 급증 / 임신부 등 여행 주의보 / 임신 초기 감염 땐 기형아 우려	중앙	10.13	경제 6면
91	베리어프리는 1974년 유엔 장애자 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개념이 구체화돼 ...	국민	10.13	종교 11면
92	연2만명 함암-방사선 치료 / 기형아 우려에 출산 포기 많아	동아	10.15	사회 16면
93	전달된 물품들은 장애우들의 손길을 거쳐 재판매되며,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직업 훈련에 사용된다.	동아	10.23	유통/소비자 C3면
94	기형아 유발 우려가 있는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유통되는가 하면 ...	세계	10.23	사회 11면
95	그러나 연쇄 살인마처럼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사이코패스는 그렇지 않다.	조선	10.24	오피니언 34면
96	안면기형아에 수술비 ... 420명 미소 되찾아	세계	10.29	특집 21면
97	현재 미숙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며 생기는 합병증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얻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서울	10.30	오피니언 29면
98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신생아나 영유아, 이른둥이(미숙아)는 성인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가 중증 합병증을 불러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국민	10.30	건강 17면
99	1개월쯤 일찍 미숙아로 태어난 뉴턴의 유년기도 행복하진 못했다.	한국	10.31	오피니언 29면
100	저상버스가 흔치 않은 제주에서 휠체어 여행객들도 탈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제주시티투어버스에 지난 5월 오픈형 2층 버스가 도입되면서 휠체어 전용좌석이 생겼다.	세계	11.01	레저 20면
101	류씨는 10년째 장애아를 키우며 느낀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아 책을 냈다.	경향	11.16	인물 25면
102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모였다.	경향	11.17	사회 16면

구분	왜곡된 표현	신문	일자	지면
103	발달장애 1급 ㄴ씨는 지난해 9월 길거리에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밀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향	11.20	1면
104	미숙아에게 흔한 '괴사성 장염'(장이 썩어들어감)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신군의 소장은 25㎝밖에 남지 않았고 그 후유증으로 단장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국민	11.27	건강 17면
105	꾸내의 재활힐링승마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자폐아 치료에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세계	11.28	인물 8면
106	2012년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당시 장애인 휠체어 영업사원이던 홍 씨는 이곳에서 김양을 '고객'으로 처음 만났다.	동아	11.29	기획 27면
107	당국은 브르타뉴와 루아르아틀랑티크 지역에서의 팔 없는 기형아 출산 건수는 "통계적으로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문화	11.01	국제 14면
108	이른둥이 -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면서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미만인 출생아. 미숙아라고도 부른다.	조선	11.02	건강 B07면
109	참외는 악성빈혈, 치매, 기형아 출산 등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	경향	11.06	경제 18면
110	임신부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경우 조산이나 미숙아 출산 위험이 커지는 것은 ...	중앙	11.08	사회 8면
111	비경제활동인구는 ... 전업주부, 연로자, 심신장애자 외에 취업준비생, 진학 준비자, 구직 포기자 등을 아우른다.	국민	11.08	경제 15면
112	유배 중에 그는 큰 아들이 척추장애자가 됐다.	국민	11.13	종교 28면
113	미숙아에 치명적인 RS바이러스 ... 정부, 예방접종 지원 강화를	경향	11.14	건강 20면
114	재단 이름은 몇 달 전 미숙아로 태어나 하루 만에 숨진 손자 이름을 따 '캘럼 재단'으로 짓겠다고 했다.	한겨레	11.16	국제 14면
115	폐결핵 환자였던 모차르트, 시각과 청각 장애자였던 헬렌 켈러,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루스벨트 ...	국민	11.17	종교 11면
116	한쪽 귀가 막힌 기형아로 태어난 벨라(3)는 국내 체류 기간이 초과한 필리핀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서울신문 11. 19. 1면〉	서울	11.19	1면
11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낸 청소년들 / 1472부 설문 분석, 사회의 공부강요 지적, 장애자 배려도 아쉬움	경향	11.22	인물 23면
118	중세 유럽에서 기형아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죽거나 버려졌다.	경향	11.27	기획 16면

□ 결론

언론의 장애인 보도 형태와 그 표현법은 아직도 개선될 부분들이 많다. 언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장애-친화적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언론 매체와 그 수요자인 장애인은 물론이고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할 과제이다.

첫째, 언론사들은 장애인 관련 보도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하다.
영국 BBC 등 많은 선진국 언론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보도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이 매뉴얼을 전 직원들에게 공유시키고 내부 모니터링 기구를 두어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언론은 장애인 관련 기사를 보도할 때 성공한 인물이나 특이한 개인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애를 양산하는 이 사회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파고드는 언론 정신과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관련 보도 태도와 관점을 모니터링하고 교육하는 사내 담당자를 두고, 보도 및 편집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장애관련 용어와 표현법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사회는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장애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 사회에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정도가 언론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이다.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이들 단체들은 언론 모니터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단편적인 모니터링에 머물러 있다. 장기 계획에 따라 구조화된 조사 지표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장애관련 제도와 예산을 개선하는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문화적 영역에 대한 대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장애인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근본에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장애인 보도 태도는 언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부락해방동맹이 1975년 9 월에 발표한 '차별어 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주장하듯이, "언어는 사회가 만들어 낸 것이고 차별어는 차별사회가 만들어 내고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차별사회의 변혁과 인민 의식의 변혁이 실현되어가는 가운데 차별어는 해소될 것이다."[6] 아울러 우리 사회는 장애와 장애인을 차이, 다양성, 다문화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모든 개인들의 가치관, 외모, 꿈, 생활 조건은 저마다 다 다르다. 장애인들 역시 한 개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동등한 존재이지만 삶의 양식은 모두 다른 존재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넷째, 정부는 언론의 장애관련 보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언론이 지켜야 할 소수자 보도 지침을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언론 종사자를 포함하고, 또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언론사의 경우 특별히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6) 임영철 외(2008).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현안토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본 혐오차별

이민훈
대전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원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본 혐오차별

이민훈 (대전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원장)

Ⅰ. 서론

200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표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많은 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장차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혐오와 차별만을 전문으로 대응하는 대응기획단을 조직하며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 국가·민족,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 표현을 조사하고, 이런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이슈화가 되었고 이에 따른 강력한 제재활동과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한 때 우리나라는 혐오의 시대라 불리는 한 해가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2016년의 일이다. 당시 유행하던 용어로 '여혐·한남충·개저씨·틀딱충·급식충'과 같이 특정성별·연령층을 혐오하는 '신조어'가 대거 탄생하였다.

용어의 사용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와 뜻을 알면 이해하기 쉽지만 대체로 '몰라서'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으며, 재미를 위해, 분위기 상 무의식적으

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2006년도에 선풍적인 유행을 한 '된장녀'의 경우 일부 TV프로그램에서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되는 아리송한 일까지 벌어졌었다. 불특정 대상층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생산되면서 용어 자체에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신조어에 장애인 역시 예외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 또는 용어들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장애인 비하발언 및 혐오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

대표적으로 추운겨울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착용하는 일명 '벙어리장갑'을 들 수 있다. 벙어리라는 말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언제부터인지 손부분이 막힌 장갑을 보며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과 모습이 비슷하다는 뜻으로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에 어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벙어리장갑을 '손모아장갑'이라고 부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식개선운동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차별용어로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들 수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장애를 가진 것은 비정상이며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평등선 상에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되고야 만다. 이와 비슷한 말 중에는 '불구(不具)'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불구라는 단어의 한자풀이를 보면 '몸의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음'의 뜻으로 지적장애인을 표현하는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옳기에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불특정 대상층의 비하 및 차별성 표현이 많고 이로 인한 혐오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몰랐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하며 살아왔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표현방식과 장애인 차별과 혐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연관된 문제인식과 개선사항을 살펴보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Ⅱ. 이론적 논의

1. 장애차별에 대한 개념

차별(discrimination)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두산세계대백과, 2019).

장애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 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합은 장애인이 주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이데올로기[1]를 보호한다(Thompson, 1993).

즉 위의 정의에 따르면 장애 차별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억압이 실제적으로 현상화 된다고 보여진다(오혜경, 2000). 예컨대 감염을 이유로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불허하는 치과 병원, 수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시각장애) 이유로 원서 접수조차 하지 않는 대학교, 지역주민의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가족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입소를 시키려는 가족들, 불심검문을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소매치기로 모는 경찰, 이동수단이 없어 집안에 방치돼 있는 사람들 등 그 현상은 다양하지만,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 즉 '장애'라는 그 자체를 중심으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 측면에서 정의되는 장애인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생활 분야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행정기관 및 공식기관 또는 비공식 기관, 개인 등이 권리 침해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1) 이데올로기(ideologie) : 인간·자연·사회에 대해 품는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의 제형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예컨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직업을 구할 때 사업주가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시켜 노동기회나 고용을 제한하거나 구분 또는 분류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업무 협력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업무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행위가 노동에서의 장애인 차별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온 것이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칙에 대한 비과학적·미신적 선입견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Alport(1958)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행동의 수준이 반대화나 회피 또는 차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있거나 장애인을 우리와 별개의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외적으로는 장애인의 취업을 찬성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것이다(서동명, 2001).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애인 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분야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 당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공정한 상태에 있지 않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차별의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2] 제30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 18가지[3] 차별 사유에 기하여 다음의 3가지 영역, 즉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②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3) 장애 외에도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차별 사유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용어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① 차별이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합당치 않은 이유로 침해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특히 소수집단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그 권리가 귀속된 개인은 차별을 받은 것이다.

②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하여 개인이 가지는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차별의 실정법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①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차별의 개념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나.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한다.

마.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함)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4) 미성년자의 몸과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이 있는 성인을 가리킴

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차별실태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2. 장차법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2007년 제정된 장차법을 2008년 시행되었고 그 이전인 2007년 10월에 장차법에 대한 개정 작업 전 법제처 주관으로 박병식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들이 장애인에 관련된 법령들의 수정을 위해 정비방안이 연구되었다.

이 연구팀은 정비방안 연구작업을 함에 있어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으며 둘째, 특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국가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접근하는 등 경제사회적 기반이 튼튼해짐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은 취업 등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제도적 및 비제도적인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셋째, 장애인 차별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등장하며 과거에는 장애라는 것 자체가 수치로 여겨졌으며 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하여 모든 능력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여 장애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는 것을 회피하였으며, 정상인에 비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정상인과 똑같은 인격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정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제도적으로 철폐하여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됨에 정비연구가 필요하다 말하였다. 이런 필요성으로 연구된 정비연구는 고스란히 장차법 개정 시 반영이 되었고 장애인의 차별은 생각과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인식행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이끌게 되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생각한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된다. 장차법은 인간의 판단행위 중 기본적으로 자신과 '다르다'는 판단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인지기능의 오류가 생겨난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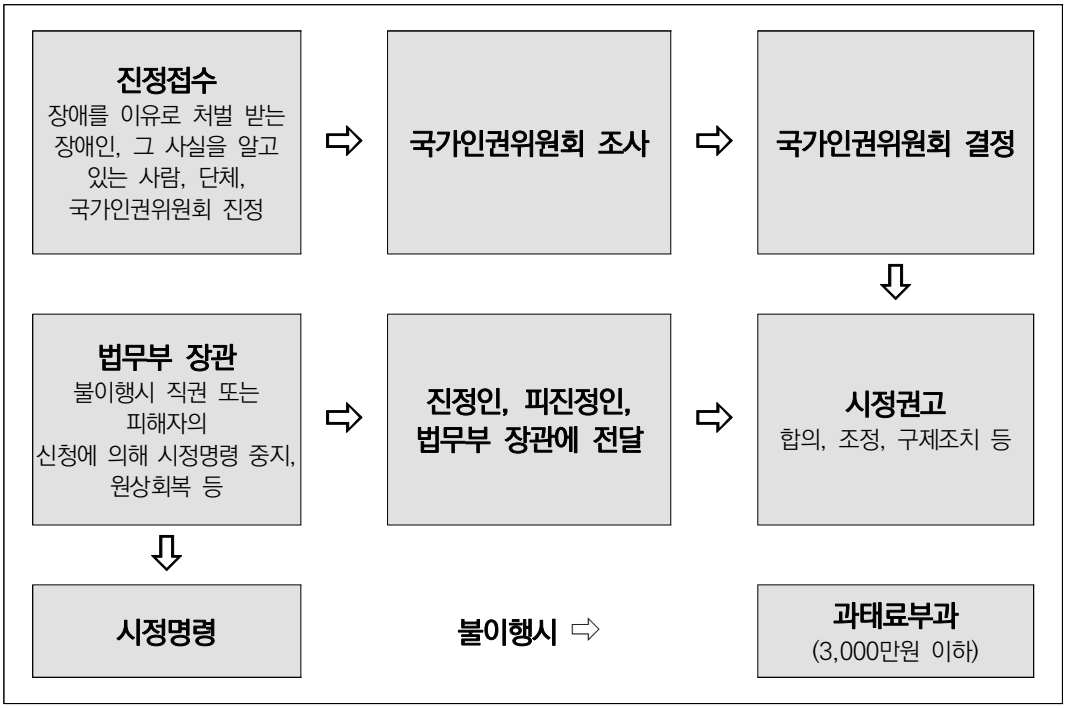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크게 6종으로 나누고 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이다. 고용부분에서 알 수 있는 차별을 통한 혐오는 면접시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심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구직자 실태조사 결과, 채용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대부분 느끼고 있었다. 차별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12.3%을 제외한 87.7%가 응답한 것.

느낀 정도를 살펴보면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이 38.1%였다.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36.4%, 중증 39.5%로 경증보다 중증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더 느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 차별 수준을 보면 시각장애가 3.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으로 감각장애와 정신장애가 차별을 더 느꼈다.

차별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증의 경우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서'가 2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험 또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18.5%, '구직정보 자체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울 때' 13%, '면접관의 장애에 대한 차별적 발언' 13% 등이었다.

중증의 경우 역시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서'가 2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험 또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23.1%, '구직정보 자체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울 때' 21% 순이었다.

장차법 제2장제1절에서는 분명 장애인에게 고용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어느 정도 혐오하는 수준을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OECD[5]의 복지 통계인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은 아홉 가지 기능별 대분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국가간 비교와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복지지출은 그중 특별 부문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에 속해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복지 집계에서 특별 부문인 이유 중 하나는 유럽통계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문의 재정지출을 복지 또는 사회보장정책이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OECD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일정 비중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달아놓았다. 즉, 장애인 전형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통해 장애인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거나 특수한 장소 및 설비를 갖추는 것 등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포함되지만, 단지 장애인 전형이나 장애인 할당 같은 것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회 복지의 배려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표준이다. 또 앞서 말했듯 유럽통계청은 재정 지출이 장애인의 고용으로 이어질 때, 이것을 사회복지가 아니라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한다. 이렇듯, '장애인 전형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국제적 흐름에도 뒤처진다.

---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의 고용이나 장애인 할당제에 관련된 세금 투입을 노동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으며, 자연스럽게 비장애인과 대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비장애인에 대한 노동정책이 복지가 아니듯 장애인에 대한 노동정책도 복지가 아닌 것이다.

만약 장애인 전형 또는 할당제를 복지라고 규정한다면 각종 여성 관련 할당 제도들도 복지라고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한 할당 제도를 복지정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지난날 비문명적 제약이 많았던 여성의 사회활동을 고양하기 위한 '긍정적 차별(discrimination positive)'의 일환으로서 그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여성 친화적인 제도들을 통해 더 나은 문명을 일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이듯, 장애인 친화적인 제도들을 통해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이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사고방식은 사람을 중시하는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한층 멀리하는 차별의 시각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육부분에서도 차별과 혐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장애인 교육의 경우 장차법 외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만 5세 장애아동은 병설유치원에 입학하려했으나 장애아동이라는 입학이 거절되었고 주변 서너 곳의 병설유치원에 연락했으나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는 신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는 일도 있었다. 서울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에게 '교실이 좁다'는 이유로 교실 밖으로 치워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했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장차법에 입각한 차별금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전혀 무의미하지만은 않다. 장차법을 시작으로 많은 비장애인들에게 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3.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

올바른 용어	올바르지 않은 용어
장애인	병신, 불구, 장애자, 장애우
비장애인	정상인
청각장애인	귀머거리, 아자(啞者)
언어장애인	벙어리, 언청이, 더듬이, 째보, 농자(聾者)
시각장애인	장님, 소경, 봉사, 사팔이, 애꾸눈
척추장애인, 척추후만증	곱추, 꼽추, 곱사등이
하반신장애인	앉은뱅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반신불수, 찐따, 외팔이
한센(씨)병	문둥병, 나병
정신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정신지체인	백치, 저능아, 정박아, 등신, 얼간이
장애가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를 앓는다.

Ⅲ. 장애인 차별 및 혐오사건 사례

1. 주민 반대로 장애인 직업체험센터 '공사 중단'

"발달장애인이 아이들 안전 위협" 주장… 세 차례 주민설명회에도 '결사반대'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에 설립하기로 한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일부 주민들은 학교 앞에 천막을 설치해 '설립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학교 앞과 인근 빌라 등엔 '결사반대'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바라보는 '님비[6](NIMBY)' 현상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다.

6)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로 인하여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1일 발달장애학생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서울커리어월드(가칭, 아래 센터)'를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직업체험센터로 성일중학교 내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4층 건물을 활용해 지어진다. 센터 설립비로 총 27억 원이 책정됐으며, 직업체험학습실 14개, 테마존 4개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2016년 상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발달장애 고등학생 50명과 전공과를 통해 직업훈련을 하는 발달장애인 40명으로 하루 총 90명이 이용하게 된다. 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 제과점, 도서관, 음악회 등의 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설립 계획은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2015년 국정과제 추진사항이며,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교육청과 공단은 착공에 앞서 지난 7월 20일, 8월 20일, 9월 1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얼마 후 공사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졌다.

'성일중학교 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반대위원회'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인근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현재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일일 최대 90명 정원의 발달장애인은 통제 불가능"하다면서 이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 "아이들의 쉴 곳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곳에서 "최고 40세까지의 성인 발달장애인도 수업을 받게 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 학생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인근 주민들 의견을 구한 적 있는가. 단지 장애학생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문제제기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센터 이용 대상자에 30~40대의 성인발달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센터엔 고등학교 1, 2학년의 발달장애학생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공과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온다. 전공과 이용자의 경우 학생이 아니기에 자료에 장애학생이 아닌 발달장애인이라고 표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조율하기 위해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동대문구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부모단체들은 지난 2일 전철수 서울시의원(동대문구,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나 면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의원 측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의원은 5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센터 설립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좋은 정책이다."라면서도 "지역주민을 설득하면서 해야지, 이런 시설을 설립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데가 있겠나. 충분한 주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힘써줄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전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을 이해해야 하므로 공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 "선출직이니 (설립 추진에) 앞장서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장애인부모들은 사실상 전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태우 동대문구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는 실질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라면서 "약자 편에 서서 복지를 위해 나서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실리명분을 내세워 지역주민 편을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직업체험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하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또다시 주민 설득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은 주민, 장애인부모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6일 저녁에 열어 의견조율을 거친 뒤 11일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설립에 집행된 예산이 있어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연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대표는 "다음번 공사 재개 시,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강혜민 기자, 주홍글씨, 2015년 10월 5일).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가미하라 장애인시설 흉기 난동 사건

“일본에서 발생한 ‘묻지마 혐오범죄/흉기 난동’ 살인 사건”

2016년 7월 26일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일본 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츠쿠이야마유리엔은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북쪽의 다카오 산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다. 총 정원 160명으로 2016년 4월 말 기준 19~75세의 장애인 총 149명이 입소해 있었으며, 이들 중 40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2016년 7월 26일 새벽 츠쿠이야마유리엔에 범인 우에마츠 사토시(남·26세)가 침입했다.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우에마츠는 자신의 차량에서 해머를 꺼내 창문을 깬 후 침입해 야근하던 직원 9명(경비원 1명, 시설 직원 8명)을 밴드로 결박하여 비상계단과 방에 묶은 뒤 열쇠를 탈취, 잠을 자고 있던 입소 장애인들을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혔다. 난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파악한 시설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당도한 새벽 2시 30분경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다.

입소자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해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고 잠을 자다가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25명 사망, 45명 부상이라고 전했으며 교도통신에서는 19명은 심폐정지 상태, 20명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직후 소방당국과 경찰 간 피해 규모 집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 60여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수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보다 많다.

중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 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가 목뼈에까지 칼이 닿았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뒤이은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의도적으로 중증 장애인만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시설에 경증 장애인도 많이 있었지만 공격당한 경증 장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후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중증 장애인만 노린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용의자는 츠쿠이야마유리엔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인 우에마츠 사토시(26세)가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범행 후인 오전 3시에 경찰서에 자진출두해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일단 경찰 측에서는 시설 근무 당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와 함께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장애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중증장애인을 구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범행 전이자 시설에 근무 중이던 2016년 2월 14일 오후에 도쿄의 중의원 의장 공관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비를 맡은 경찰관에게 저지당했고, 다음 날 다시 공관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했다. 당시 우에마츠가 전달한 편지에는 "장애인이 안락사할 수 있는 세계를"이라는 문구와 함께 츠쿠이야마유리엔을 지목하면서 장애인 470명을 말살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으며, 같은 달 18일에는 츠쿠이야마유리엔 직원에게 "국가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중증 장애인을 대량학살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접한 시설측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소변 및 혈액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또한 평소에도 우에마츠가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은 죽어주는 게 낫다,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600명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장애인 혐오를 드러낸 정황도 발견되었다. 또한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 장애인들은 정도가 심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안락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뮌헨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 날 "독일에서 총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난사. 장난감이라면 즐거울 텐데"라는 개인 SNS 메시지와 함께 모형 총기를 쏘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고도 한다.

당연히 우에마츠는 그 후 정신병원에 입원 당했고, 대마초 양성 반응과 망상장애를 진단받았으나, 곧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밝혀지면서 위험인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우에마츠가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새벽 2시 50분에 "세계가 평화로와 지기를! 뷰티풀 재팬!!(beautiful Japan)"이라는 개인 SNS 메시지를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각을 보여 범행 후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우에마츠가 평소 인사성이 바르고 밝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2016년 2월 우에마츠가 시설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입소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었다고 한다.

범인의 지인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에마츠가 예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왔던 게 아니라, 적성에 맞지 않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생계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엉뚱하게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상근으로 근무할 때는 일이 힘들다고 토로할 뿐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을 전혀 내보이지 않았지만 상근으로 전환된 지 1년 후부터 증오심을 내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에마츠의 압수품에서 마리화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각성제 검사와 각종 검사로 대마정신병, 망상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지인들에 말에 따르면 바베큐 파티 도중 활주로가 보인다는 환각 증상을 보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그의 집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었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고] 장애우? 내가 친구입니까?

"뜻 좋지만 안 맞는 용어 장애인 문제 그대로 남아"

장애인, 장애자,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아동, 장애학생, 장애유아…,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인, 지체부자유인 등….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현재 장애라는 상태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가? 그 많은 용어들에 더하여 대략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바로 '장애우'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제는 워낙 심각하고 절박한 것이 많아서, 무슨 용어가 사용되건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사치스럽다고 할지 모른다. 현재의 산적한 장애문제 해

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용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본다면 '장애우'라는 용어는 아주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 친구'라고 칭하는 것이다.

왜 장애인을 장애친구라고 부르는가? 처음에 '장애우'라는 용어를 등장시킨 사람들이 '장애인' 대신에 그렇게 부르고자 했던 것의 정확한 이유를 나는 모른다. 다만 추측하건대, 장애인을 적어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미 장애인들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장애인을 좀더 가깝게 지각하려는 다짐 같은 종류의 생각이 결집되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봄,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나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장애 분야의 성실한 발전에 힘입어, 조금은 여유 있게 이제까지의 일들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지향으로 나아가자는 바람일 수 있다.

4월처럼 '장애인의 날'이 있는 때는 각종 방송이나 신문기사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를 마치 장애인을 아주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의도의 상징처럼 사용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왜 모든 장애인을 친구라고 부르는가? 친구가 그런 것이었는가? 장애인은 누구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장애인은 사랑과 정에 부족함을 느껴서, 혹은 친구가 없거나 적어서, 우리가 친구라고 불러주면 다 친구해 준다고 했는가? 누구 맘대로? 그렇다. '장애우'라는 용어는 확실히 장애인을 우리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담겨 있다. 장애인이 다 친구는 아니다. 장애를 안 가진 사람들 사이에 누가 친구라는 용어를 그리 쉽게 사용하는가?

물론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에서는 아니다. 또한, 장애우란 용어는 철저하게 부르는 사람만의 용어이다. "너는 장애우이다"라는 말은 되어도, "나는 장애우이다"라는 식의 1인칭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나, 장애인은 내가 '누구의 친구'라는 것인지, 내가 언제 누구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했는지, 그저 모를 일일 뿐이다.

장애우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장애인을, 장애인 문제를, 그리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단체를, 혹은 사회를, 부분적으로나마 '미화'할 수 있었던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천사', 아니 그 이상의 멋진 용어들이 나온다 해도, 이 장애라는 녀석은 유유자적하게 우리를 보고, "그래? 그리도 멋진 용어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한 번 해보거라"라며 씨익 웃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를 덧붙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 문제는 펄펄 살아서 그 모습 그 무게 그대로 있다"라고(박승희 이화여대 교수·특수교육학, 조선일보, 2004년 4월 28일).

Ⅳ. 종언

장애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이런 삶은 당시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고대의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노예보다 못한 삶과 제례의식의 희상물로만 여겨졌으며 근대의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잘못된 정보와 인식으로 인한 사회성을 잃은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아주 먼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하대 받는 일을 반복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결여되는 안타까운 대우를 받아왔음에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길 희망해 본다.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은 주관적 판단으로 인지된 장애인과 교육을 통해 학습된 장애인의 모습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분명한 것은 다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장애인의 삶과 모습, 생활상을 보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다른 것을 찾는 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오히려 '우린 왜 다르지'라는 의문에 빠질 것이다. 사회적 재원이 많이 투여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되고 계획된 행동처럼 활동하지 못할지라도 장애인은 분명 누군가에게 무시 받고 괄실 받고 사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이다.

어쩌면 혐오라는 말 자체에 우리는 편견을 만들고 있으며 누군가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필자는 항상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는다. '다르지 않아요. 조금 불편할 뿐...'

참고문헌

- 김준환·박주현·오영훈(2017), 장애인복지론, 도서출판 어가
- 김성재(1997), 장애우 정책 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김성재·강윤주·김광이 외(2007), 장애차별실태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연구, 대통령자문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오시진, 차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A Theoretical Study of the Discrimination in Law), 제6권 제2호(2012.12) pp.9-3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사례-장애부문 2002-2007
- 김도현(2009),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 조선일보, 뉴스큐레이터 정영민, 2017, 무심코 쓰는 이 용어, 나만 불편해?
- 주홍글씨, 강혜민 기자, 2015, 주민 반대로 장애인 직업체험센터 '공사 중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장애인 차별 법령 발굴 및 정비방안, 2007, 법제처·한국정책평가단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Ⅰ.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

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8.12.)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건수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428	1,102	12,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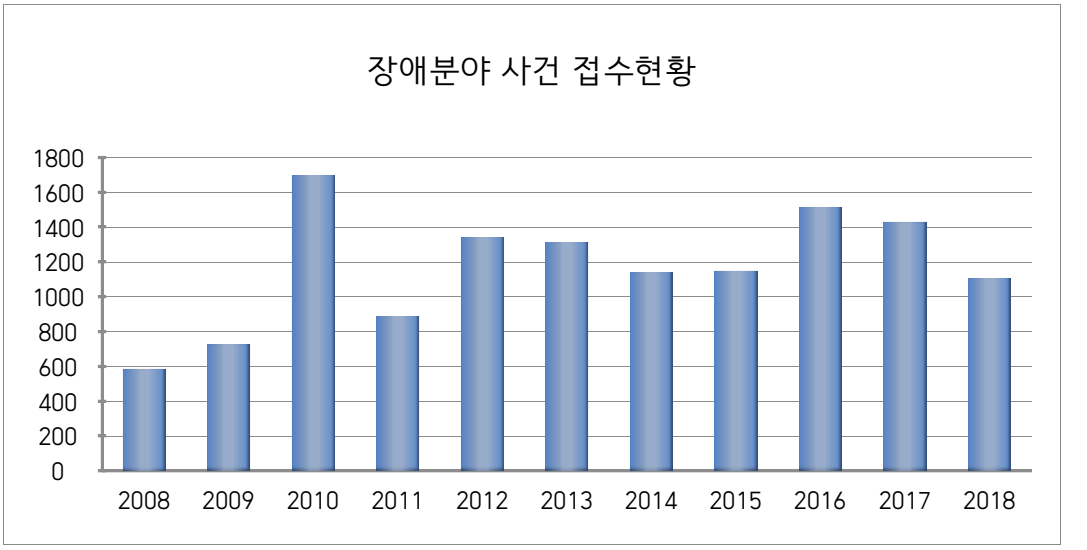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Ⅱ.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8.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8. 12.	진정건수	28,750	15,227	13,523
		비율(%)	*100.0*	*53.0*	*47.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8. 12.	진정건수	24,481	11,611	12,870
		비율(%)	*100.0*	*47.4*	*52.6*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2015. 12	진정건수	2,188	1,041	1,147
		비율(%)	*100.0*	*47.6*	*52.4*
	2016. 1.~ 2016. 12.	진정건수	2,432	921	1,511
		비율(%)	*100.0*	*37.9*	*6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등	장애
	2017. 1.~ 2017. 12.	진정건수	3,152	1,724	1,428
		비율(%)	*100.0*	*54.7*	*45.3*
	2018. 1.~ 2018. 12.	진정건수	2,187	1,085	1,102
		비율(%)	*100.0*	*49.6*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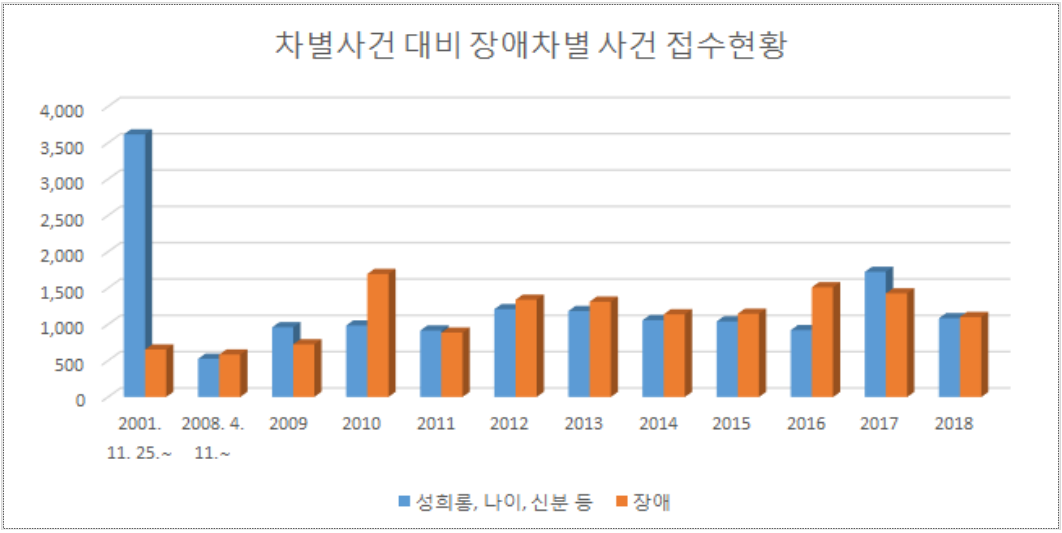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8.12.)

(단위: 건)

연도(년) 구분		총	장차법 이전	2001 (11~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시행 이후	2008 (4.11~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 진정 건수	연도별	13,523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2,870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428	1,102
	월평균	65.6	8.4	6.5	1.7	1.5	4.5	10.1	9.7	21.3	16.5	100.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119	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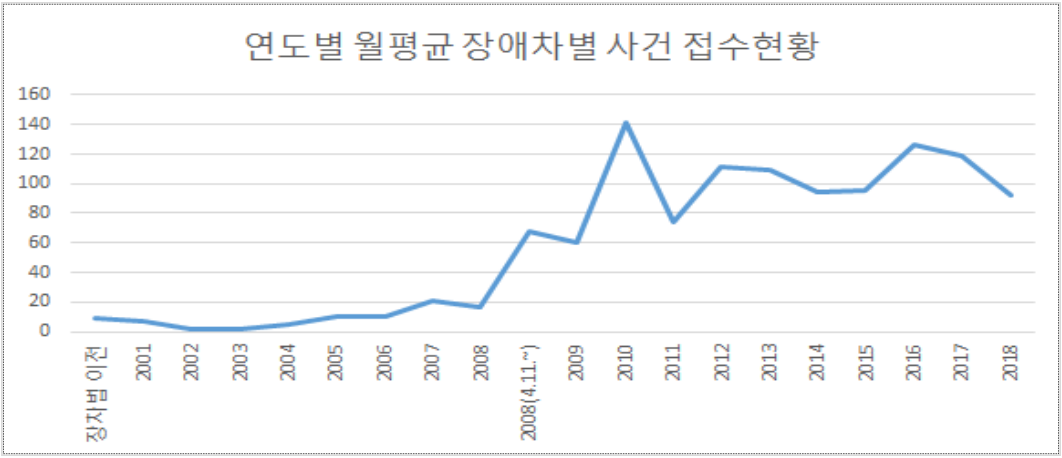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8.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8.12.31.)

(단위: 건, %)

년도	유형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장애	기타
전체	**사건수**	**12,870**	**4,125**	**3,277**	**931**	**1,314**	**1,521**	**98**	**498**	**1,106**
	비율	***100.00***	***32.05***	***25.46***	***7.23***	***10.21***	***11.82***	***0.76***	***3.87***	***8.60***
2008	사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0*	*12.31*	*14.53*	*5.98*	*7.69*	*4.96*	*0.17*	*2.56*	*51.79*
2009	사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0*	*39.72*	*12.55*	*9.52*	*6.34*	*9.66*	*1.52*	*6.07*	*14.62*
2010	사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0*	*29.97*	*25.19*	*8.02*	*16.22*	*10.68*	*0.47*	*4.31*	*5.13*
2011	사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0*	*33.52*	*16.03*	*6.43*	*8.13*	*24.15*	*0.90*	*5.42*	*5.42*
2012	사건수	1,340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0*	*36.72*	*14.40*	*6.49*	*10.60*	*17.24*	*0.97*	*3.51*	*10.07*
2013	사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0*	*28.96*	*22.79*	*5.41*	*19.13*	*8.77*	*0.53*	*3.81*	*10.59*
2014	사건수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100.00*	*35.29*	*25.46*	*8.08*	*9.83*	*9.13*	*1.14*	*4.83*	*6.23*
2015	사건수	1,147	333	440	93	101	102	5	30	43
	비율	*100.00*	*29.03*	*38.36*	*8.11*	*8.81*	*8.89*	*0.44*	*2.62*	*3.75*
2016	사건수	1,511	628	329	101	93	247	7	62	44
	비율	*100.00*	*41.56*	*21.77*	*6.68*	*6.15*	*16.35*	*0.46*	*4.10*	*2.91*
2017	사건수	1,428	421	578	97	98	102	12	52	68
	비율	*100.00*	*29.48*	*40.48*	*6.79*	*6.86*	*7.14*	*0.84*	*3.64*	*4.76*
2018	사건수	1,102	304	403	93	79	126	13	22	62
	비율	*100.00*	*27.59*	*36.57*	*8.44*	*7.17*	*11.43*	*1.18*	*2.00*	*5.63*
등록 장애인 구성비[1)]	인원 (천명)	2,546	1,254	253	253	302	226	20	102	136
	비율	*100.0*	*49.3*	*9.9*	*9.9*	*11.9*	*8.9*	*0.8*	*4.0*	*5.4*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7. 12. 기준(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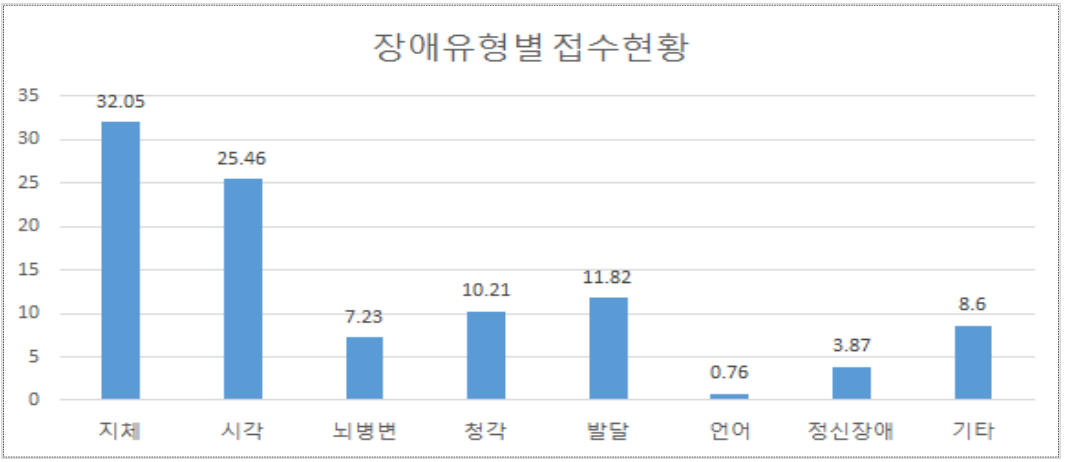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7.12.31.)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년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보험·금융	시설물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기타				
전체	**12,870**	**769**	**1,173**	**7,832**	**2,098**	**754**	**1,548**	**987**	**1,934**	**342**	**169**	**427**	**178**	**1,372**	**1,119**
	100.0	***5.98***	***9.11***	***60.8***	***16.3***	***5.86***	***12.0***	***7.67***	***15.0***	***2.66***	***1.31***	***3.32***	***1.38***	***10.6***	***8.70***
2008	585	41	61	347	26	49	78	128	35	20	11	44	11	42	39
	100.0	*7.01*	*10.4*	*59.3*	*4.44*	*8.38*	*13.3*	*21.8*	*5.98*	*3.42*	*1.88*	*7.52*	*1.88*	*7.18*	*6.67*
2009	725	69	49	412	150	91	93	49	13	13	3	39	3	105	48
	100.0	*9.52*	*6.76*	*56.8*	*20.6*	*12.5*	*12.8*	*6.76*	*1.79*	*1.79*	*0.41*	*5.38*	*0.41*	*14.4*	*6.62*
2010	1,695	82	55	1,26	286	65	263	103	506	36	10	26	13	176	74
	100.0	*4.84*	*3.24*	*74.8*	*16.8*	*3.83*	*15.5*	*6.08*	*29.8*	*2.12*	*0.59*	*1.53*	*0.77*	*10.4*	*4.37*
2011	886	64	62	487	164	70	67	67	45	59	15	77	3	105	88
	100.0	*7.22*	*7.00*	*54.9*	*18.5*	*7.90*	*7.56*	*7.56*	*5.08*	*6.66*	*1.69*	*8.69*	*0.34*	*11.8*	*9.93*
2012	1,340	82	96	808	175	153	252	40	42	133	13	36	57	111	150
	100.0	*6.12*	*7.16*	*60.3*	*13.0*	*11.4*	*18.8*	*2.99*	*3.13*	*9.93*	*0.97*	*2.69*	*4.25*	*8.28*	*11.1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접수 년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 행정	참정 권	괴롭 힘 등	기타
				소계	재화 · 용역	보험 · 금융	시설 물접 근	이동 교통 수단	정보 접근 · 의사 소통	문화 · 예술 · 체육	기타				
2013	1,312	75	45	706	132	55	128	49	307	13	22	30	41	303	112
	100.0	*5.72*	*3.43*	*53.8*	*10.1*	*4.19*	*9.76*	*3.73*	*23.4*	*0.99*	*1.68*	*2.29*	*3.13*	*23.1*	*8.54*
2014	1,139	94	66	677	172	62	142	108	166	19	8	42	19	123	118
	100.0	*8.25*	*5.79*	*59.4*	*15.1*	*5.44*	*12.5*	*9.48*	*14.5*	*1.67*	*0.70*	*3.69*	*1.67*	*10.8*	*10.36*
2015	1,147	69	55	733	120	82	125	99	286	12	9	38	-	121	131
	100.0	*6.02*	*4.80*	*63.9*	*10.5*	*7.15*	*10.9*	*8.63*	*24.9*	*1.05*	*0.78*	*3.31*	-	*10.5*	*11.42*
2016	1,511	56	536	643	242	48	117	58	161	8	9	46	16	88	126
	100.0	*3.71*	*35.5*	*42.5*	*16.0*	*3.18*	*7.74*	*3.84*	*10.6*	*0.53*	*0.60*	*3.04*	*1.06*	*5.82*	*8.34*
2017	1,428	80	90	994	393	46	137	215	168	7	28	27	4	91	142
	100.0	*5.60*	*6.30*	*69.6*	*27.5*	*3.22*	*9.59*	*15.0*	*11.8*	*0.49*	*1.96*	*1.89*	*0.28*	*6.37*	*9.94*
2018	1,102	57	58	756	238	33	146	71	205	47	16	22	11	107	91
	100.0	*5.17*	*5.26*	*68.6*	*21.6*	*2.99*	*13.2*	*6.44*	*18.6*	*4.27*	*1.45*	*2.00*	*1.00*	*9.71*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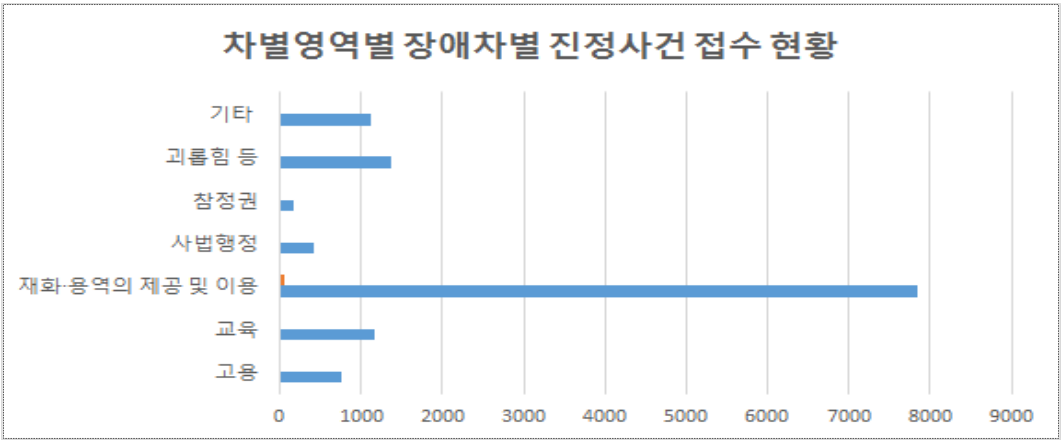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마.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 분		2001. 11.25. ~ 2008.4 .10.	2008. 4.11. ~ 2008. 12.31.	2009. 1. 1. ~ 2009. 12.31.	2010. 1. 1. ~ 2010. 12.31.	2011. 1. 1. ~ 2011. 12.31.	2012. 1. 1. ~ 2012. 12.31.	2013. 1. 1. ~ 2013. 12.31.	2014. 1. 1. ~ 2014. 12.31.	2015. 1. 1. ~ 2015. 12.31.	2016. 1. 1. ~ 2016. 12.31.	2017. 1. 1. ~ 2017. 12.31.	2018. 1.1.~2 018.1 2.31.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11년 (2008. 4~ 2018. 12.)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428	1,102	12,870
	월평 균	8.4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119	91.8	100.5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80	57	**769**
	월평 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4.7	6.0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90	58	**1,173**
	월평 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7.5	4.8	9.1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3	994	756	**7,832**
	월평 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6	82.8	63.0	61.2
사법·행정/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8	62	31	33	**605**
	월평 균	-	6.3	3.5	3.3	6.7	7.8	5.9	5.1	3.2	5.2	2.6	2.75	4.7
괴롭힘,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4	233	198	**2,491**
	월평 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8	19.4	16.5	19.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8.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장애	기타
소계		**12,870**	**4,125**	**3,277**	**931**	**1,314**	**1,521**	**98**	**498**	**1,106**
고용		769	276	76	63	120	64	15	46	109
교육		1,173	452	89	63	98	373	8	15	75
재화·용역	소계	7,832	2,538	2,690	558	764	586	40	145	511
	재화·용역	2,098	583	695	210	151	254	17	64	124
	보험·금융	754	164	157	74	137	107	9	59	47
	시설물접근	1,548	1,070	212	131	16	16	2	5	96
	이동교통수단	987	536	188	86	27	44	5	2	99
	정보접근·의사소통	1,934	44	1,369	17	361	27	6	2	108
	문화·예술·체육	342	75	29	20	65	122	-	9	22
	기타	169	66	40	20	7	16	1	4	15
사법행정		427	82	91	23	51	78	5	50	47
참정권		178	60	35	8	8	8	-	3	56
괴롭힘 등		1,372	345	82	130	220	308	17	158	112
기타		1,119	372	214	86	53	104	13	81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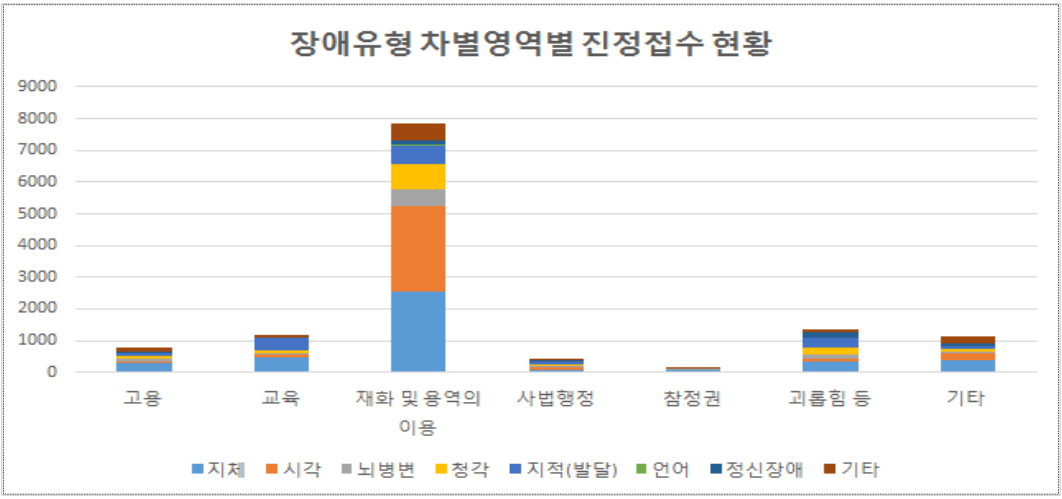

[그림 6] 장애유형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 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가. 고용 영역(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고용								
		합계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합계		769	287	103	79	18	34	166	8	74
		100.00	*37.3*	*13.3*	*10.2*	*2.3*	*4.4*	*21.5*	*1.0*	*9.6*
2008	합계	41	19	5	6	1	-	8	1	1
		100.0	*46.3*	*12.2*	*14.6*	*2.4*	-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	1	1	1
	사적	23	8	4	4	-	-	7	-	-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100.0	*43.4*	*17.3*	*8.7*	*2.9*	*1.4*	*23.1*	*1.4*	*1.4*
	공공	20	11	-	5	1	-	2	-	1
	사적	49	19	12	1	1	1	14	1	-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	9
		100.0	*32.9*	*14.6*	*15.8*	*3.6*	*3.6*	*18.2*	-	*10.9*
	공공	30	11	-	8	3	1	4	-	3
	사적	52	16	12	5	-	2	11	-	6
2011	합계	64	23	10	4	1	-	17	1	8
		100.0	*35.9*	*15.6*	*6.2*	*1.5*	-	*26.5*	*1.5*	*12.5*
	공공	14	8	-	-	-	-	2	1	3
	사적	50	15	10	4	1	-	15	-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	8
		100.0	*40.2*	*12.2*	*6.1*	*1.2*	*6.1*	*24.3*	-	*9.7*
	공공	34	18	4	2	1	2	4	-	3
	사적	48	15	6	3	-	3	16	-	5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	12
		100.0	*37.3*	*13.3*	*8.0*	*1.3*	*1.3*	*22.6*	-	*16.0*
	공공	29	15	1	4	1	-	2	-	6
	사적	46	13	9	2	-	1	15	-	6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고용								
		합계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	4
		100.0	*40.4*	*11.7*	*11.7*	*3.1*	*5.3*	*23.4*	-	*4.2*
	공공	24	16	1	4	2	-	1	-	-
	사적	70	22	10	7	1	5	21	-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	14
		100.0	*28.9*	*11.5*	*4.3*	*1.4*	*13.0*	*20.2*	-	*20.2*
	공공	18	11	-	2	1	2	-	-	2
	사적	51	9	8	1	-	7	14	-	12
2016	합계	56	27	5	5	2	2	12	-	3
		100.0	*48.2*	*8.9*	*8.9*	*3.5*	*3.5*	*21.4*	-	*5.3*
	공공	24	16	-	2	1	1	2	-	2
	사적	32	11	5	3	1	1	10	-	1
2017	합계	80	17	13	13	1	4	18	4	10
		100.0	*21.2*	*16.2*	*16.2*	*1.2*	*5.0*	*22.5*	*5.0*	*12.5*
	공공	28	11	3	5	1	2	2	2	2
	사적	52	6	10	8	-	2	16	2	8
2018	합계	57	25	7	7	2	4	7	1	4
		100.0	*43.8*	*12.2*	*12.2*	*3.5*	*7.0*	*12.2*	*1.7*	*7.0*
	공공	21	12	-	4	2	2	-	-	1
	사적	36	13	7	3	-	2	7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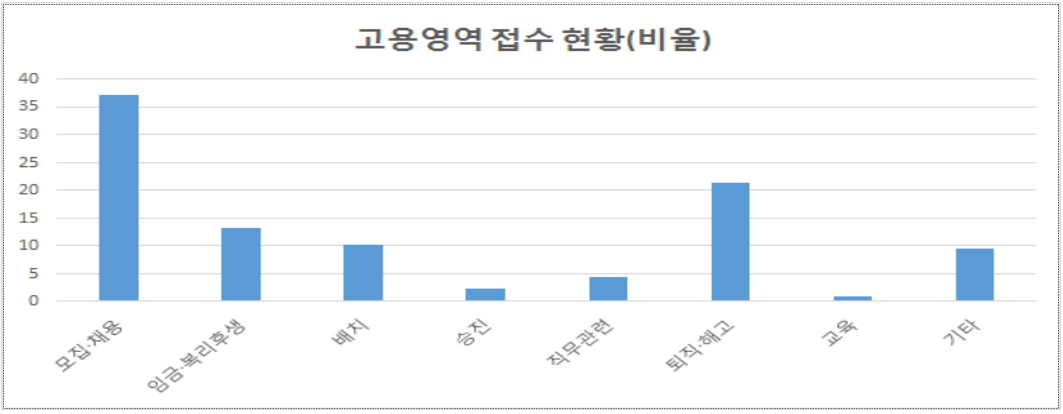

[그림 7] 고용영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나. 교육 영역(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교육							
		합계	전·입학 거부	시설물 접근·이용	수업·시험 편의제공	수업등교내 활동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합계		1,173	98	65	220	140	93	50	507
		100.0	*8.35*	*5.54*	*18.76*	*11.94*	*7.93*	*4.26*	*43.1*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100.0	*14.75*	*22.95*	*22.95*	*11.48*	*9.84*	*4.92*	*13.11*
	공공	34	6	7	5	5	5	1	5
	사적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100.0	*32.65*	*4.08*	*16.33*	*26.53*	*2.04*	*6.12*	*12.24*
	공공	28	7	2	4	8	1	2	4
	사적	21	9	-	4	5	-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100.0	*7.27*	*18.18*	*21.82*	*10.91*	*7.27*	*12.73*	*21.82*
	공공	35	-	1	6	5	4	7	12
	사적	20	4	9	6	1	-	-	-
2011	합계	62	10	6	7	1	3	-	35
		100.0	*16.13*	*9.68*	*11.29*	*1.61*	*4.84*	-	*56.45*
	공공	43	6	5	1	-	3	-	28
	사적	19	4	1	6	1	-	-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100.0	*9.38*	*2.08*	*13.54*	*3.13*	*53.13*	*2.08*	*16.67*
	공공	79	3	1	9	2	51	2	11
	사적	17	6	1	4	1	-	-	5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100.0	*20.00*	*15.56*	*13.33*	*6.67*	*15.56*	*4.44*	*24.44*
	공공	30	2	6	6	3	5	2	6
	사적	15	7	1	-	-	2	-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100.0	*9.09*	*15.15*	*25.76*	*3.03*	*15.15*	*12.12*	*19.70*
	공공	44	3	6	8	1	10	5	11
	사적	22	3	4	9	1	-	3	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교육							
		합계	전·입학 거부	시설물 접근·이용	수업·시험 편의제공	수업등교내 활동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100.0	*9.09*	*1.82*	*27.27*	*7.27*	*5.45*	*12.73*	*36.36*
	공공	42	3	-	7	4	3	7	18
	사적	13	2	1	8	-	-	-	2
2016	합계	536	4	6	81	88	1	4	352
		100.0	*0.75*	*1.12*	*15.11*	*16.42*	*0.19*	*0.75*	*65.67*
	공공	526	3	5	80	87	1	-	350
	사적	10	1	1	1	1	-	4	2
2017	합계	90	19	3	32	7	2	6	21
		100.0	*21.11*	*3.33*	*35.56*	*7.78*	*2.22*	*6.67*	*23.3*
	공공	77	18	2	30	6	2	5	14
	사적	13	1	1	2	1	-	1	7
2018	합계	58	7	4	15	6	5	8	13
		100.0	*12.07*	*6.90*	*25.86*	*10.34*	*8.62*	*13.79*	*22.3*
	공공	45	6	2	11	4	5	7	10
	사적	13	1	2	4	2	-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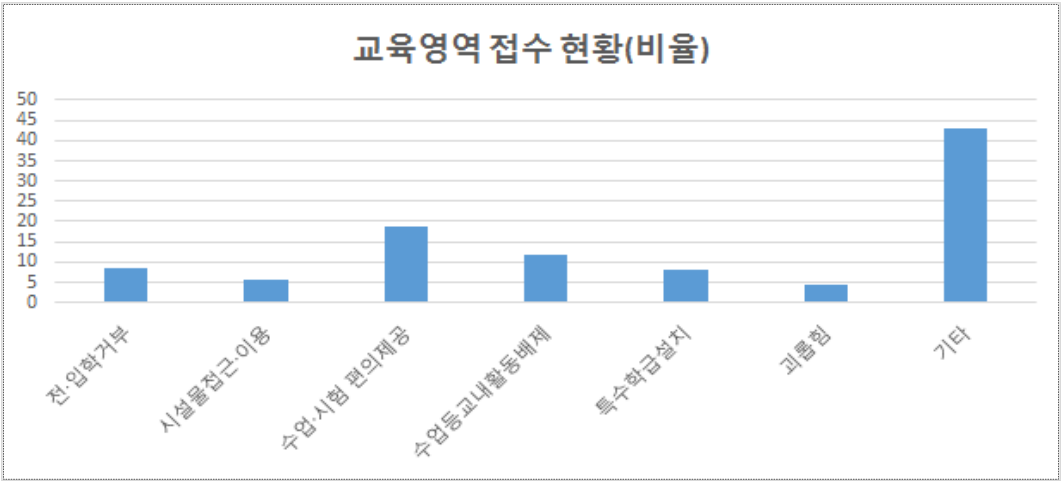

[그림 8] 교육영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다. 재화·용역 영역(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재화·용역							
		합계	재화·용역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기타
합계		7,832	2,098	754	1,548	987	1,934	342	169
		100.00	*26.79*	*9.63*	*19.77*	*12.60*	*24.69*	*4.37*	*2.10*
2008	합계	347	26	49	78	128	35	20	11
		100.00	*7.49*	*14.12*	*22.48*	*36.89*	*10.09*	*5.76*	*3.17*
	공공	140	3	5	26	83	9	8	6
	사적	207	23	44	52	45	26	12	5
2009	합계	412	150	91	93	49	13	13	3
		100.00	*36.41*	*22.09*	*22.57*	*11.89*	*3.16*	*3.16*	*0.73*
	공공	154	64	7	33	36	4	8	2
	사적	258	86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86	65	263	103	506	36	10
		100.00	*22.54*	*5.12*	*20.72*	*8.12*	*39.87*	*2.84*	*0.79*
	공공	762	208	6	181	71	269	24	3
	사적	507	78	59	82	32	237	12	7
2011	합계	487	164	70	67	67	45	59	15
		100.00	*33.68*	*14.37*	*13.76*	*13.76*	*9.24*	*12.11*	*3.08*
	공공	212	72	4	23	34	26	45	8
	사적	275	92	66	44	33	19	14	7
2012	합계	808	175	153	252	40	42	133	13
		100.00	*21.66*	*18.94*	*31.19*	*4.95*	*5.20*	*16.46*	*1.61*
	공공	353	77	9	119	27	15	100	6
	사적	455	98	144	133	13	27	33	7
2013	합계	706	132	55	128	49	307	13	22
		100.00	*18.70*	*7.79*	*18.13*	*6.94*	*43.48*	*1.84*	*3.12*
	공공	175	47	7	39	28	45	4	5
	사적	531	85	48	89	21	262	9	17
2014	합계	677	172	62	142	108	166	19	8
		100.00	*25.41*	*9.16*	*20.97*	*15.95*	*24.52*	*2.81*	*1.18*
	공공	224	64	8	49	43	48	9	3
	사적	453	108	54	93	65	118	10	5

접수 년도	공사 구분	재화·용역							
		합계	재화·용역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기타
2015	합계	733	120	82	125	99	286	12	9
		100.00	*16.37*	*11.19*	*17.05*	*13.51*	*39.02*	*1.64*	*1.23*
	공공	188	36	8	38	35	65	4	2
	사적	545	84	74	87	64	221	8	7
2016	합계	643	242	48	117	58	161	8	9
		100.00	*37.64*	*7.47*	*18.20*	*9.02*	*25.04*	*1.24*	*1.40*
	공공	208	84	9	45	39	27	1	3
	사적	435	158	39	72	19	134	7	6
2017	합계	994	393	46	137	215	168	7	28
		100.00	*39.54*	*4.63*	*13.78*	*21.63*	*16.90*	*0.70*	*2.80*
	공공	575	277	4	44	186	50	3	11
	사적	419	116	42	93	29	118	4	17
2018	합계	756	238	33	146	71	205	22	41
		100.00	*31.48*	*4.37*	*19.31*	*9.39*	*27.12*	*2.91*	*5.40*
	공공	323	91	5	82	41	67	13	24
	사적	433	147	28	64	30	138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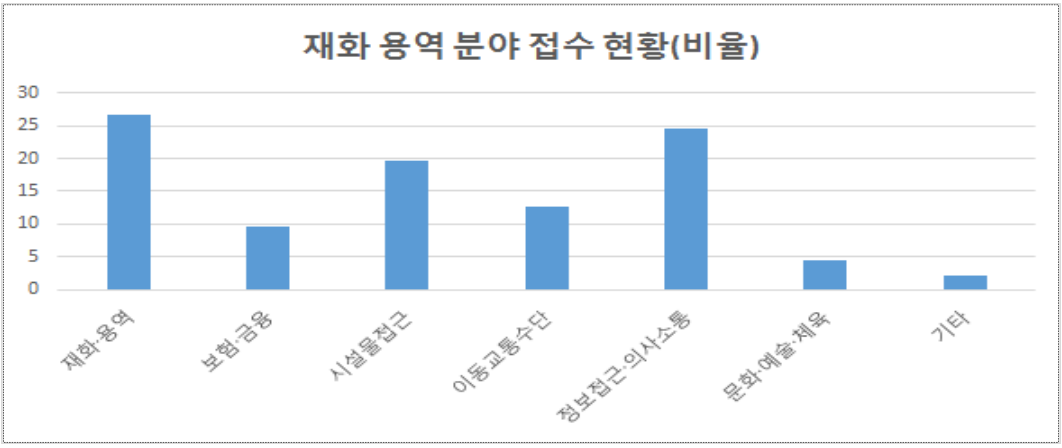

[그림 8] 재화 용역 영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 착취	모욕·비하	기타
합계	합계	1,372	28	32	29	225	146	798	114
		100.00	*2.04*	*2.33*	*2.11*	*16.40*	*10.64*	*58.16*	*8.20*
	공공	230	7	3	4	38	5	149	24
	사적	1,142	21	29	25	187	141	649	90
2008	합계	42	-	-	3	5	7	26	1
		100.00	-	-	*7.14*	*11.90*	*16.67*	*61.90*	*2.38*
	공공	2	-	-	-	-	1	-	1
	사적	40	-	-	3	5	6	26	-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100.00	*0.95*	*3.81*	*5.71*	*18.10*	*15.24*	*50.48*	*5.71*
	공공	18	1	-	-	4	-	12	1
	사적	87	-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100.00	*1.70*	*5.68*	*1.14*	*22.73*	*13.07*	*43.75*	*11.93*
	공공	32	1	1	-	6	1	16	7
	사적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	22	16	50	9
		100.00	*3.81*	*3.81*	-	*20.95*	*15.24*	*47.62*	*8.57*
	공공	19	-	1	-	4	1	12	1
	사적	86	4	3	-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100.00	*3.60*	*3.60*	*0.90*	*19.82*	*16.22*	*45.05*	*10.81*
	공공	17	1	-	-	2	-	13	1
	사적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100.00	*1.65*	*0.66*	*1.65*	*7.92*	*6.27*	*76.90*	*4.95*
	공공	16	1	-	2	1	-	10	2
	사적	287	4	2	3	23	19	223	13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100.00	*1.63*	*2.44*	*4.88*	*13.82*	*16.26*	*54.47*	*6.50*
	공공	18	2	-	2	4	2	8	-
	사적	105	-	3	4	13	18	59	8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 착취	모욕·비하	기타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100.00	*1.65*	*2.48*	*0.83*	*19.01*	*8.26*	*59.50*	*8.26*
	공공	22	-	-	-	3	-	17	2
	사적	99	2	3	1	20	10	55	8
2016	합계	88	1	-	3	20	3	50	11
		100.00	*1.14*	-	*3.41*	*22.73*	*3.41*	*56.82*	*12.50*
	공공	19	-	-	-	5	-	10	4
	사적	69	1	-	3	15	3	40	7
2017	합계	91	4	2	1	17	12	50	5
		100.00	*4.40*	*2.20*	*1.10*	*18.68*	*13.19*	*54.95*	*5.50*
	공공	19	1	1	-	6	-	10	1
	사적	72	3	1	1	11	12	40	4
2018	합계	107	2	-	1	16	2	70	16
		100.00	*1.87*	-	*0.93*	*14.95*	*1.87*	*65.42*	*14.90*
	공공	48	-	-	-	3	-	41	4
	사적	59	2	-	1	13	2	2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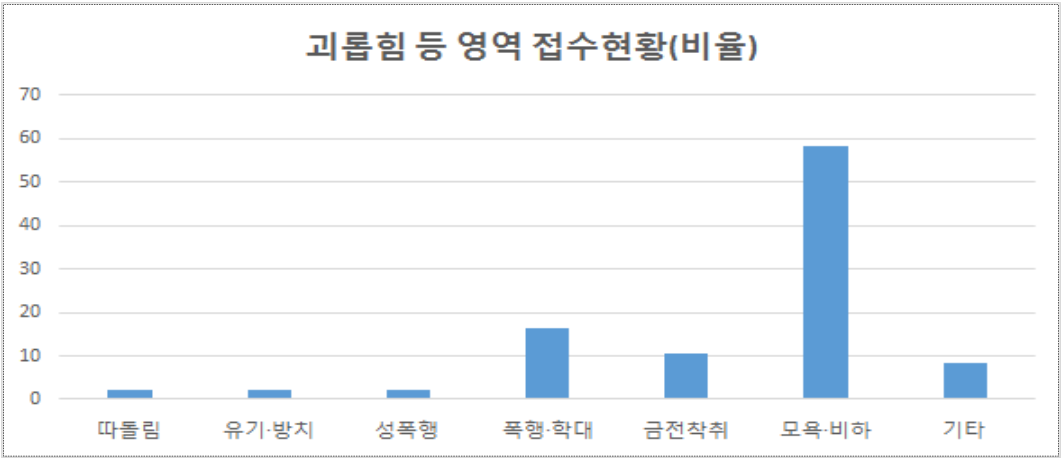

[그림 8] 괴롭힘 등 영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Ⅳ.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8.12.31.)(단위: 건)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3,063	22	18	39	116	90	255	455	72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40	1,086	1,316

[그림 8]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8.12.3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8.12.31.)

1) 총괄 현황

(단위: 건, %)

종료년도	합계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합계	**12,481**	**870**	**4**	**5**	**456**	**11**	**8**	**1**	**385**	**11,605**	**6,815**	**49**	**4,729**	**18**
2008	413	34	-	-	22	-	-	-	12	379	221	-	157	1
2009	721	57	-	-	10	-	-	-	47	664	353	6	301	4
2010	1,101	85	-	1	25	3	-	-	56	1,016	663	15	332	6
2011	952	156	1	-	119	4	-	-	32	796	381	4	410	1
2012	1,508	136	1	-	115	-	-	-	20	1,371	616	1	754	1
2013	1,563	108	-	-	27	1	1	-	79	1,455	755	1	699	-
2014	1,096	79	-	1	15	2	-	-	61	1,014	560	5	449	3
2015	1,085	36	-	-	14	-	3	-	19	1,049	663	6	380	-
2016	1,640	51	-	3	19	-	-	-	29	1,589	1,199	7	383	-
2017	1,086	91	-	-	67	1	2	-	21	993	628	4	361	4
2018	1,316	37	2	-	23	-	2	1	9	1,279	776	-	503	-

* 조정: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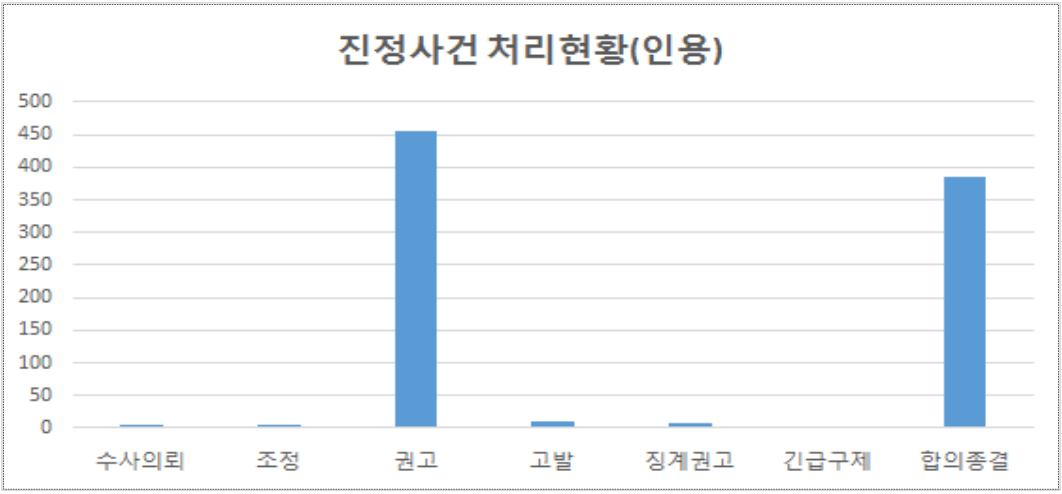

[그림 9] 진정사건 처리 현황(인용)(2001.11.25.~2018.12.31.)

2) 각하 사유별 현황

종료 년도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법원확정판결	조사중 각하
합계	6,815	1,095	32	133	83	150	10	70	5,128	96	6	12
2008	221	54	1	6	11	2	1	2	139	5	-	-
2009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2010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201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2012	616	62	3	14	9	16	4	9	495	3	-	1
2013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2014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2015	663	49	1	8	7	14	1	12	561	8	-	2
2016	1,199	101	12	11	4	16	-	3	1,048	3	-	1
2017	628	60	1	11	7	12	1	5	525	5	-	1
2018	776	125	1	12	4	6	-	8	614	4	-	2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조사 중 각하(제32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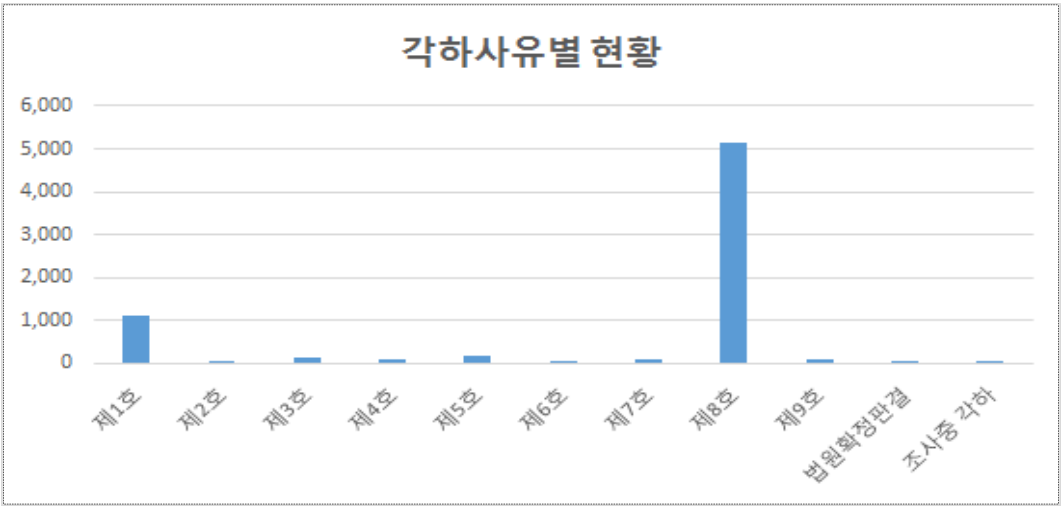

[그림 10] 진정사건 처리 현황(각하)(2001.11.25.~2018.12.31.)

3) 기각사유별 현황

종료년도	소계	제1호-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제2호-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않음	제3호-구제조치가 필요하지않음
합계	4,729	679	1,243	2,807
2008	157	20	56	81
2009	301	39	107	155
2010	332	61	94	177
2011	410	59	146	205
2012	754	74	115	565
2013	699	62	102	535
2014	449	86	123	240
2015	380	62	139	179
2016	383	66	119	198
2017	361	81	113	167
2018	503	69	129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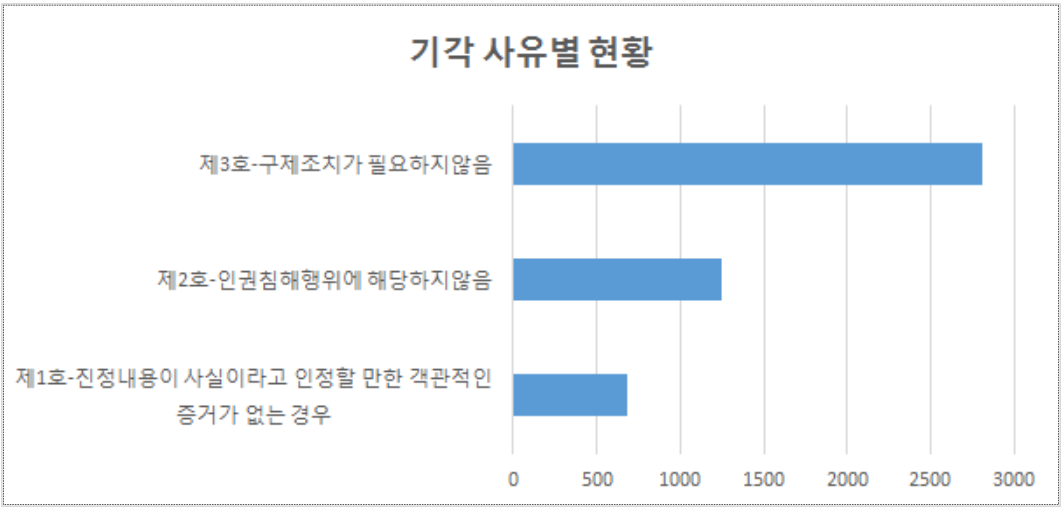

[그림 11] 진정사건 처리 현황(기각)(2001.11.25.~2018.12.31.)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

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

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

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

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제목개정 2010. 5. 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 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

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

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부칙 〈제15272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

| 인 쇄 | 2019년 4월
| 발 행 | 2019년 4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 주 소 |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타워 13층
| 전 화 | (042) 472-9038 | F A X | (042) 472-9046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83-8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